

면지

한국사회는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사회연구소가 발행하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학술지로써 연2회 발간된다. 한국사회연구소는 급변하는 현대 한국사회와 국제지역사회의 제반 현상을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대사회구조와 변동에 대한 설명과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각종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1996년 8월 22일 설립되었다.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우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Tel: 02) 3290-1651 / Fax: 02) 924-4365

E-mail: lab050korea.ac.kr Homepage: <http://isrku.org>

한국사회 투고: socialresearchku@gmail.com

2021년도 한국사회연구소 임원

소장

김원섭(고려대 사회학과)

부소장

신은경(고려대 사회학과)

센터장

사회트렌드 센터장: 임인숙(고려대 사회학과)

지역사회개발교육 센터장: 김수한(고려대 사회학과)

데이터분석 센터장: 김선업(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자문위원

노익상(한국리서치)

염재호(고려대)

장하성(고려대)

(이상 가나다순)

운영위원

김수한 김진영 김철규 김형찬 마동훈 박길성 송효종 신현석

윤인진 이명진 임인숙 정일준 조대엽

(이상 가나다순)

한국 사회

2021년 제22집 2호

차례

〈일반논문〉

- 이주배경청년의 시민적 위계화와 사회적 주변화: 국적과 출생지, 젠더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 송영호 · 최영미 3
 - 김영삼 정부 이후의 국방문민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 김경필 · 남윤철 39
 -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주변인으로서의 인식 탐색
| 양재영 · 임승엽 75
-
- 한국사회 연구윤리규정 103
 - 원고제출 및 작성 요강 113

이주배경청년의 시민적 위계화와 사회적 주변화: 국적과 출생지, 젠더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송 영 호** · 최 영 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년의 시민적 위계화가 사회적 주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SSK이주배경청년사업단의 「2021년 이주배경청년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자료는 학령기 이후 사회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 25~34세의 이주배경청년 300명(국내출생 204명, 중도입국 96명)을 대상으로 비확률적 표집방식인 유목적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비모수 추정 방법을 통해 도출한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응답자가 한국 사회에서 계층이동이 제한되고 배제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회적 주변화 인식은 예상과 달리 부정적인 편은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 일반 청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시민적 계층화 유형에 따른 사회적 주변화의 수준은 외국출생자 중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집단의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이는 한국으로 유입된 이주배경청년이 한국사회에서 이동성과 유연성,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지만, 오히려 주류사회와의 경쟁 과정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낙인으로 기회 공정성, 불평등 인식이 부정적 방향으로 증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비모수적 회귀분석 결과 시민적 위계화의 위세가 낮은 집단일수록 사회적 주변화 인식이 부적(-) 방향으로 증가하였다. 즉 한국 사회에서 차등적인 시민권 부여로 객관적인 위세가 낮은 집단일수록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더욱더 느끼고, 상향 이동이 그만큼 폐쇄되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한국국적 취득 이후 시민적 위계화의 편입 과정에서 오히려 불안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중도입국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더욱 섬세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1047675)

** 제1저자,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song0505@gmail.com

*** 교신저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dop80@hanmail.net

주제어: 이주배경청년, 시민적 위계화, 사회적 주변화, 프레카리아트화, 비모수적 추정

I. 서론

한국사회에서 청년의 불안정성(precarity)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소득,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교육 및 문화 등 다차원적인 불안정성으로 사회적 고립과 소외, 사회적 배제¹⁾와 박탈을 경험한다(박수명, 2013; 김재희·박은규, 2016; 김안나·홍현우, 2018; 이순미, 2018; 이승윤·이정아·백승호, 2016; 김비오, 2019; 변금선·김기현, 2019; 김수정, 2020; 박지현, 2020).

이러한 사회적 배제와 불안정성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이 두드러지고 있는 이주배경청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중도입국자녀²⁾의 경우 초국가적 이동에 따른 교육 기회 및 경력 단절은 빈천한 문화자본과 인적자본으로 귀결된다(채소린, 2021). 이들이 경험하는 초국가적 불안정성(transnational precarity)은 한국사회에서 경제인으로서 사회적 배제와 낙인, 차별 등 누적적이고 복합적인 불평등을 경험하면서 더욱 악화하는 양상이다. 물론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배경청년이 모두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거주한 중국동포의 지위 분화에 따라 엘리트, 지식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전문직 종사자 집단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으로 유

-
- 1) 사회적 배제는 어느 한 지점에서 틀 지워진 정태적인 현상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권리의 부정이나 개인이 정치적, 도덕적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와 연결되는 고리가 매우 미약한 상태로 이해된다. 이는 박탈과 결핍을 일으키는 변화의 흐름과 과정을 포함하는 동태적인 역학(dynamics)에 초점이 있다(Pierson, 2002; Room, 1995).
 - 2) 중도입국자녀는 20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증가에 따라 나타난 집단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국외 출생자)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경우를 말한다.

학을 통하여 대기업, 교수, 변호사 등으로 지위 상승을 이룬 조선족 3세들이 대부분이다(김지혜, 2020; 이정은, 2012; 예동근, 2011). 한국 일반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양극화되는 것처럼 이주배경청년도 그 경향성이 뚜렷해진다.

한국사회에서 주변적 위치로 부유하는 이주민의 삶은 원인, 과정, 결과 모두 사회적 배제로 수렴된다(최혜지, 2019).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형성된 서열적 질서가 이주민의 경제적 궁핍, 사회적 단절, 문화적 고립으로 이어진다. 이주민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불안정성은 거주국 사회(destination society)에서 위계와 관련된다. 이주배경청년도 본인의 체류자격과 부모의 출신지, 성별과 연령, 한국어 능력 등에 따른 계층화로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불평등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이주민의 출신지와 민족, 국적과 인종, 연령, 젠더 등 사회적 지위가 결합하여 위계화된 사회적 지위가 새롭게 형성되게 된다(Lockwood, 1996; Yuval-Davis, 2006; 설동훈, 2020; 안창혜, 2016; 정현주, 2020; 최혜지, 2019). 그로 인해 이주민들은 거주국 사회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과도한 노동, 고용불안정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질 낮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등 주류사회와는 다른 궤적의 주변화된 일상을 살게 된다(손인서, 2020). 이주민의 이주배경에 따른 차등적 권리부여는 사회경제적인 불평등 구조와 맞물려 권리주체로서 이주민의 동등성을 제약하게 되는 것이다(박상희, 2021).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이주 레짐과 그에 따른 이주민의 시민적 위계화, 노동시장과 일상에서 불평등 양상에 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수행되었다(김철효, 2021; 서준우·강우창, 2021; 설동훈, 2020; 김민정, 2019; 한준성·최진우, 2018; 한준성, 2017; 전의령, 2015; 이정은, 2012; 박우, 2011; 박경태, 2005). 하지만 인종, 출신, 민족, 국적과 같은 사회적 위치에 따른 이주민의 시민적 위계화가 한국사회를 향한 소속감과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손인서, 2020). 즉 위계화된 시민적 위치가 사회심리적인 관점에서 주관적인 인식으로 이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이주배

경청년이 한국사회에서 '청년'이자 '이주민'의 지위가 교차할 때, 객관적인 시민적 위계화가 주관적인 불평등과 불공정 인식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둘 사이의 괴리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지금까지 이주배경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국사회 적응과 이에 따른 정책지원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주류사회인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맥락과 취약성, 그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에 관한 연구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이주배경 청년의 시민적 위계화와 사회적 주변화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설동훈·스크렌트니(Seol and Skrentny, 2009)의 위계화된 민족(hierarchical nationhood) 개념과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이 가족 배경에 따라 상이하다는 계층화가설(stratification hypothesis)(Furlong et al., 2003)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구성원이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서열화된 서발턴 지위에 따라 이주배경청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특히 이주배경청년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차별과 주변화 인식이 차별의 교차성 관점에서 자신들의 이주배경에 따른 위계수준(국적, 출생지, 성별)에 따라 가중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논의의 초점이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에 자신들의 위계화된 이주 배경이 스스로 느끼는 사회적 위축과 주변화 인식에 걸림돌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이주배경청년의 국적, 출생지, 젠더에 따른 시민적 위계화의 실제와 사회적 배제와 상향이동의 폐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간의 격차를 비교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이주배경청년의 개념과 연구 동향

이주배경청년은 정부와 법률에 따른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다. 중앙정부 부처에 따라 이주배경자녀에 대한 정의와 대상 범위가 상이하다.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일원화된 통계도 없어서 규모 추정도 불가능한 현실이다.

우선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다문화가족자녀’로 지칭³⁾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이라고 지칭하고 그 범위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는 범주와는 별개로 정부 부처별로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범주는 혼용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인주민자녀로 정의하고, 이들의 범주를 ‘국내출생자녀’와 ‘귀화 및 외국인자녀’를 포함한다. 교육부는 ‘다문화학생’이라고 통칭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국내출생자녀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의 용어를 사용한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국내출생자, 외국거주경험자,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 범주(만 19~34세)에 해당하는 이주배경을 가진 자녀, 즉 국내출생자녀와 중도입국자녀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주배경청년’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주배경청년에 관한 연구는 청년이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이행기에 청년이 있다는 점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연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그동안 이주배경자녀에 대한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에 집중되고, 이주배경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우선 이주배경청소년 연구는 한국사회의 이주배경청소년 담론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관한 논의(박응희, 2014;

3)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결혼가정 자녀’와 ‘한국인과 귀화자 결혼가정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다.

김도혜, 2012; 정수정·류방란, 2012; 이민경·이수정, 2013)가 주요한 축이다. 그리고 국제이주의 다변화로 복잡하게 분화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유형화(신윤정 외, 2018)와 범주별로 상이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환경과 부적응(전경숙, 2017; 최영미·송영호, 2020; 융티탄프엉·김기화, 2018; 김이선 외, 2015)이 있다. 특히 출생지와 거주지가 다른 중도입국청소년의 체류 자격에 따른 불안정성, 그로 인한 차별경험과 정체성 혼란, 부모의 재혼과 이혼에 따른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김민경, 2020; 송원일·유진이, 2020; 김수영·이성규, 2019; 고은혜, 배상률, 2017; 이은영, 황혜원, 2016; 석희정, 하춘광, 2015; 정희정, 김소연, 2014; 오성배·서덕희, 2012)에 관한 연구로 그 폭은 넓다. 이주배경청소년은 성장기 청소년의 발달과정과 이주배경으로 인한 인종, 종교, 민족, 문화 등의 다름으로 인한 부담을 겪고 있다(김은경·김현주, 2017: 246).

최근에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으로까지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김민선·김재훈, 2021; 김진희·이로미·권진희, 2021; 윤형준, 2019) 성인이 된 이주배경청년들의 사회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환기(윤형준, 2019), 이주배경청년들의 개인·사회·환경적 특성과 우울 간의 관계(김민선·김재훈, 2021), 북한이탈 청년(정영선, 2018) 등 연구의 범위는 다양하다. 특히 김진희·이로미·권진희(2021)는 이주배경청년은 출생지역, 국적, 언어 구사력 등 외재적 준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회적 소속감, 사회적 위치가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영선(2018)도 북한이탈 청년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 경험은 한국사회 구성원이지만 여전히 이방인, 유목인, 경계인으로 주변화되는 현실을 분석하였다. 예동근·오혜정(2020)은 초국가적 공간에서 중국동포 청년들의 이미지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동포에 한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친족, 사회연결망을 통하여 종족성, 다문화성, 사회성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를 생성시키면서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의미와 위치, 그에 따른 사회적 이미지 변화의 궤적을 분석하였다.

2. 시민적 계층화(civic stratification)

마샬(Marschall, 1964; 2009)은 국민국가 체제(nation state)의 시민성 개념으로 ‘국민’은 모두 동일한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특정 국민국가의 성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한계이다. 시민권 논의는 사람들 간의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의 출현이 전제되며 위계적 사회구조에 바탕을 둔 봉건적 지배인 신분제의 몰락에서 시작되었다(Turner, 1986). 이러한 시민권은 국가에 소속된 법적 성원권을 넘어서는 정치적 공동체의 성원권으로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Snel et al., 2015; Soysal, 1994; 설동훈, 2007). 하지만 현대의 국민국가 체제에서는 ‘동일한’ 시민권의 권리는 부정되며, 시민권은 차별적으로 부여되고 있다(Lockwood, 1996). 그 결과 개인의 삶의 기회와 사회적 정체성을 구조화하는 시민적 계층화(civic stratification)가 보편적으로 작동하게 된다(Lockwood, 1996; 안창혜, 2016; 정현주, 2020).

〈표 1〉 록우드(Lockwood)의 시민적 계층화 유형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	
		+	-
시민권 권리	+	시민적 획득 (civic gain)	시민적 결핍 (civic deficit)
	-	시민적 확장 (civic expansion)	시민적 배제 (civic exclusion)

출처 : Lockwood(1996; 537-543)

록우드(Lockwood, 1996)는 시민적 계층화를 물질적(화폐)/비물질적(사회적 자본) 자원의 보유 여부와 시민적 권리(법적 지위) 여부에 따라 시민적 획득(civic gain), 시민적 확장(civic expansion), 시민적 결핍(civic deficit), 시민적 배제(civic exclusion)로 유형화하였다(Lockwood, 1996; 537-543)(〈표

1) 참조). 모리스(Morris, 2002; 2004)는 록우드(Lockwood, 1996)의 시민적 계층화 개념을 적용하여 이주민 관리 정책으로서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가 다양하게 나타내는 사례를 분석했다. 초국가적 이주에 대응하기 위한 이주 관리 시스템은 성원권을 제한하기 마련이고, 이 과정에서 시민적 계층화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모리스(Morris, 2002)는 록우드의 유형화를 변형하여 거주국에서 이주민이 자유롭게 정주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가 획득된 상태를 시민적 포섭(civic inclusion)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시민적 배제(civic exclusion), 시민적 확장(civic expansion), 시민적 축소(civic contraction)를 정의했다.

안창혜(2016)는 록우드의 논의를 기반으로 한국의 이주 제도는 이주민의 국적, 민족, 성별, 계층의 역동 위에서 시민적 위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시민적 위계화는 사회적 공간과 결부되어 직업 선택과 주거지 정착에서도 차등화를 가져오기도 한다(정현주, 2020). 위계화된 시민권과 시민권 제도는 결국 ‘누가 시민이며, 그중에서도 1, 2등 시민을 구별짓는 구별짓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설동훈(2020)은 ‘위계화된 민족(hierarchical nationhood)’ 개념을 사용하여 중국 조선족이 ‘동포’로서 한민족으로 포섭되지만 동시에 ‘외국인’이라는 배제가 작동하는 집단이라고 설명한다. 채소린(2021)은 한국 정부의 애매한 체류 정책으로 조선족이 한국사회에서 배제된 정주자라는 애매한 위치에 머물게 했다고 지적한다. 박경숙(2012)도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경험하는 분리와 배제가 발전주의 체제에서 위계화된 시민권에서 구조화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3. 사회적 주변화

‘주변화’(marginalisation)는 ‘집단 외부로 개인 또는 집단을 격하시키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배제하고 무시하는 것’을 내포한다. 즉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인 ‘주변화’는 주류집단이 발생하는 과정과 주류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하게 되는 과정이다(Hall et. al., 1994). 도시사회학

자인 파크(Park, 1928)는 언더클래스(underclass)보다 마지널리티(marginality)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민자의 주변화를 설명하였다(황규성, 2016). 이후 주변화된 사람은 인종, 계급, 젠더 등으로 그 논의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웅저(Wenger, 1999)는 주변화가 개인의 자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위적인 상황이며, 주변으로 밀려난 개인이 자력으로 주류사회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원인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원인으로 '주변화'를 주목할 때 비주류, 소수집단인 이주민들의 '주변성'이 제대로 지적될 수 있다. 즉, 주류집단이 소수집단을 의도적이며 지속적으로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하도록 만든 사회구조적인 과정에 관심을 둔다.

문화접변 이론가 베리(Berry, 1997)는 문화접변(acculturation)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였는데, 동화(assimilation), 통합(integr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이다. 베리의 주변화는 자신의 출신국에서의 고유문화와 이주국에서의 주류문화 모두를 거부하면서 주변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민들이 주류문화에 통합되지 못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다(Bernt and Colini, 2013). 특히 이러한 주변화 양상은 입국년도, 거주국 언어, 사회경제적 지위, 태어난 장소(Kristen and Granato, 2007; Crul and Vermeulen, 2003; RiPhahn, 2003; Worbs, 2003; Alba and Müller, 1994; Köhler, 1992; Seifert, 1992; Esser, 1990)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주민의 주변화 양상은 경제적 주변화, 사회적 주변화, 법적 주변화로 구분해볼 수 있다(Winchester and White, 1988).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주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적 주변화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정치, 문화, 경제 영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배제되고 무시당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인식에 기초한 개념이다(Manstead, 2018).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본인의 실제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신이 속한 집단과는 별개로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사회적 주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주변화 양상은 사회통합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고상두·하명신(2012)은 출신국별로 살펴보았을 때

터키 이주민들이 사회통합의 부진함을 보였는데, 이는 입국 조건과 같은 제도적 요인, 문화적 차이의 정도, 이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받게 되는 차별의 정도 등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인지된 사회적 주변화가 진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England et al., 2020)을 미치고, 주관적 사회계층에 대한 지각과 진로 적응성(안진아, 2019), 사회적 주변화와 일자리(Douglass et al., 2017; Tokar and Kaut, 2018), 사회적 주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관측은 일자리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김민선·백근영, 2020)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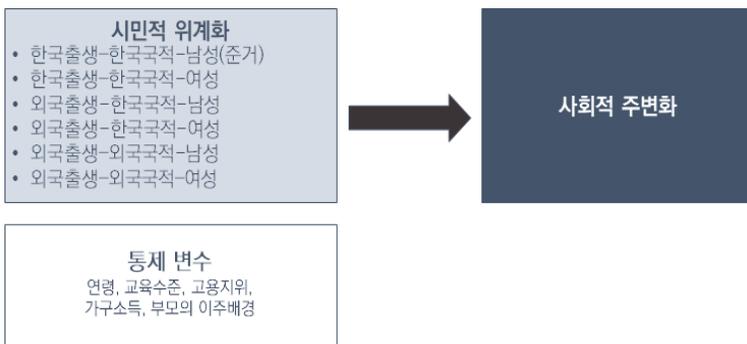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첫째, 이주배경청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주변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이주배경청년의 출생지, 국적, 젠더에 따른 시민적 위계화 유형에 따라 사회적 주변화 인식 수준은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여타의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시민적 위계화 유형이 사회적 주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그림 1〉 연구 모형



III. 연구 방법

1. 자료

이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청년들의 성공적인 성인기 진입과 삶의 질 제고 사업단(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단)”이 2021년에 실시한 「이주배경 청년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자료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삶의 질과 개인 건강, 교육 및 진로, 고용 및 일 경험, 사회적 관계, 차별 경험, 다문화 수용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이주배경청년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출생 자녀와 중도입국자녀로 한정하고 부모 모두가 외국 국적자의 자녀는 제외하였다. 즉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외국 출생인 국제결혼 가족 자녀로 제한하였다. 연령 범주는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 범주(만 19세~34세) 중 만 25세에서 34세까지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가 제한하고 있는 25~34세는 학령기 이후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이고, 이주배경자녀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인 「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만 24세까지만 조사하고 있어서 그 이후 이주배경청년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 연령대로 특정하였다. 조사는 이주배경청년의 모집단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부재하여, 비확률적 표집방식인 유목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다만 여러 한계가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인구센서스와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기반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을 하였다. 실사는 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연구소가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300명으로 국내출생 청년은 204명이고 중도입국 청년은 96명이다.

2. 분석 변수

1) 종속변수 : 사회적 주변화

종속변수인 사회적 주변화는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집단에서의 본인의 위치, 구성원으로서의 존재감 등을 측정하는 개념이다. 이는 극심하고 지속해서 불리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회공정성과 불평등 인식과도 연관이 높다. 본 연구는 독일의 '집단 적대감'(Gruppenbezogene Menschenfeindlichkeit) 조사 (Heitmeyer, 2008)에서 사용한 문항으로 김민선과 백근영(2021)이 연구를 위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① “한국 사회에서 나 같은 사람은 덜 가치롭게 여겨진다”, ② “일자리를 찾을 때 내 배경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것이다.” ③ “나 같은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기란 어려운 일이다.” ④ “한국사회에서는 나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이다. 전체 문항은 4점 척도 (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 = 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하였다. 4개의 문항은 단일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종속변수는 4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0.86$).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이 주변화되었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시민적 위계화이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주민의 시민적 위계화는 대체로 국적, 종족, 계급, 젠더가 핵심 기제로 확인된다. 이주배경청년의 경우 한국에서 나고 자란 경우와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출생하고 중간에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적 보유(한국국적, 외국국적), 출생지(국내출생, 국외출생)와 젠더(남성, 여성)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갖게 되는 위치와 포섭의 정도가 위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적 위계화 유형을 한국 국적 보유 여부, 출생

지역, 성별 변수를 결합하여 유형화를 하였다(〈표 2〉 참조). 한국출생의 경우 모두 한국 국적이므로 ‘국내출생-한국국적-남성’, ‘국내출생-한국국적-여성’, ‘외국출생-한국국적-남성’, ‘외국출생-한국국적-여성’, ‘외국출생-외국국적-남성’, ‘외국출생-외국국적-여성’의 6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민적 위계화는 일정한 서열변수로 준거집단을 기준으로 그 사회적 지위와 위세가 얼마나 취약한지로 해석하였다.

〈표 2〉 시민적 위계화 유형

		성별	
		남성	여성
국내출생	한국국적	‘국내출생-한국국적-남성’ 88(29.3%)	‘국내출생-한국국적-여성’ 116(38.7%)
	외국국적	-	-
국외출생	한국국적	‘국외출생-한국국적-남성’ 18(6.0%)	‘국외출생-한국국적-여성’ 30(10.0%)
	외국국적	‘국외출생-외국국적-남성’ 19(6.3%)	‘국외출생-외국국적-남성’ 29(9.7%)

3) 통제변수

본 연구는 이주배경청년의 객관적 실재인 시민적 위계화와 주관적 인식인 사회적 주변화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사회적 주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직업 지위, 외국출신 부모의 이주배경을 통제하였다. 특히 교육수준은 교육받은 기간을 계산하여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직업 지위는 ‘직업 없음’을 준거로 상용직과 비상용직으로 구분하였다. 외국출신부모의 이주배경은 조사할 때 부모의 출신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한계로 부모 중 누가 외국 출신(아버지 외국출신, 어머니 외국출신)인지로 구분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즉 부모 중 어머

니가 결혼이주민인 경우 중국, 베트남, 태국 등 대체로 아시아권 출신인 경우가 많지만,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미주, 유럽 지역 출신이 많아서 부모 중 누가 외국 출신인가에 따른 인종, 종족적 요인을 대리할 수 있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비모수 추정(Nonparametric estimation)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비모수 추정은 분석 자료의 모집단을 알 수 없을 경우나 모집단을 특정 분포로 가정하지 않고 추정하는 통계 기법이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인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모집단 정보가 부재하여 확률분포를 알 수 없고, 수집된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아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분포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 추정 방법으로 시민적 위계화 유형에 따른 사회적 주변화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크루스칼 월리스(Kruskal-Wallis) 검증을 하였다. 다음으로 시민적 위계화와 사회적 주변화 간의 관계 검증을 위해서는 비모수 회귀분석인 커널 회귀분석(Kernal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커널회귀분석은 전체 관측치를 여러 구간으로 나눈 뒤 각각의 구간별로 회귀분석(local regression)을 실시하여 이를 평평하게 연결(smoothing)하여 전체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안종범, 2003). 특히 커널 회귀분석은 더미 변수와 같은 이산 변수를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분석 방법이다(Li and Racine, 2020). 커널 함수 추정은 epanechnikov 함수를 사용하였고, 대역폭(bandwidth)은 Cross-validation 방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계패키지 Stata17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성별은 남성 41.7%, 여성 58.3%로 여성이 16.6%p 많다. 연령별은 25~29세 55.7%, 30~34세 44.3%이고 평균 연령은 28.9세이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 5.3%, 2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26.7%, 400만원이상~600만원미만 43.0%, 600만원이상 25.0%이다. 주관적인 계층인식은 중간층이 54.7%로 가장 많고, 하층 35.7%, 상층 9.7% 순이다. 현재 일자리가 있는 경우는 84.0%로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인 경우가 절반(50.0%)을 차지한다. 그리고 응답자의 46.4%(139명)가 대학 재학 이상으로 교육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응답자의 출생지는 국내출생 68.0%, 국외출생(중도입국) 32.0%로 국내출생이 국외출생보다 2배 넘게 많았다. 부모 중 아버지만 외국출신인 경우는 28.0%, 어머니만 외국출신은 72.0%로 어머니가 결혼이민자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300)	100.0
성별	남성	(125)	41.7
	여성	(175)	58.3
연령	25~29세	(167)	55.7
	30~34세	(133)	44.3
학력 수준	고졸 이하	(74)	24.7
	전문대 재학, 수료, 졸업	(87)	29.0
	대학교 재학, 수료, 졸업	(134)	44.7
	대학원 재학, 수료, 졸업	(5)	1.7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계속〉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일자리 유무	있음	(252)	84.0
	없음	(48)	16.0
주관적 계층	하층	(107)	35.7
	중층	(164)	54.7
	상층	(29)	9.7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	5.3
	200~400만원 미만	(80)	26.7
	400~600만원 미만	(129)	43.0
	600만원 이상	(75)	25.0
출생지	한국	(204)	68.0
	외국	(96)	32.0
부모 이주배경	아버지만 외국출신	(84)	28.0
	어머니만 외국출신	(216)	72.0

2. 사회적 주변화 수준 비교

응답자가 인식하는 사회적 주변화 수준을 살펴보았다(〈표 4〉 참조). 사회적 주변화의 4가지 문항 중 동의 비율(‘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은 ‘한국 사회에서 나 같은 사람은 덜 가치롭게 여겨진다’(16.1%, 1.73점)가 가장 높고, ‘한국 사회에서는 나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8.7%, 1.52점)가 가장 낮았다. 이는 김민선·백근영(2021)의 일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고임금 집단’ 평균값(1.97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예상과 달리 이주배경청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주변화 수준은 부정적이지 않았다. 이는 응답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소외 인식이 극단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이주배경청년은 출신지와 인종, 젠더 등에 따라 주변화된 대중(marginal mass)으로서 주류의 밖에 위치하는 외부인(outsider)이거나 문화

와 문화 사이에서 부유하는 경계인(border rider)으로 여겨져 왔다. 그에 따라 이들은 거주국 사회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확실한 소속감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져 왔다(Dunne, 2005; Park 1928). 하지만 본 연구의 사회적 주변화 수준은 기존의 연구들과는 결을 달리한다. 즉 ‘청년’과 ‘이주배경’이 교차하면서 ‘복합적 배경으로 고립무원의 회색지대에 갇힌’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홍진주, 2021). 사회적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증폭될 것이라는 편견 내지는 고정관념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주배경청년이 하나의 범주로 묶이는 집단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에 따라 분화한다.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달라서 실제 이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사회 이동과 불평등 인식이 한국 일반 청년층보다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정성, 이민자로서 한국 사회를 향한 소속감과 불안정성은 부정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표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도 연관이 될 수 있다. 즉 응답자 중 일을 하는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이주배경청년이 많이 표집되고, 그만큼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비가시적인 청년들이 표집 과정에서 빠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4〉 사회적 주변화 인식 수준

항목	빈도(%)		평균 (4점척도)
	동의	비동의	
한국 사회에서 나 같은 사람은 덜 가치롭게 여겨진다	16.1	84.0	1.73
일자리를 찾을 때 내 배경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것이다	11.7	88.3	1.68
나 같은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기란 어려운 일이다	13.0	87.0	1.65
한국 사회에서는 나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8.7	91.3	1.52

앞서 살펴본 사회적 주변화 수준이 위계화된 시민권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비모수 통계방법인 크루스칼 왈리스(Kruskal-Wallis) 검증을 하였다(〈표 5〉 참조). 사회적 주변화 변수는 4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검정 통계량($\chi^2=25.448$)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시민적 위계화의 유형에 따라 사회적 주변화 분포는 차이가 있다. 특히 본페로니 검증(bonferroni test)을 한 결과 준거 변수와 ‘국외출생-한국국적-남성’과 ‘국외출생-한국국적-여성’과 집단 간 분포의 차이가 확인하였다(〈그림 2〉 참고). 국외출생인 이들 집단은 준거집단과 대등한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지만, 오히려 사회적 소외감은 여타의 집단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5〉 시민적 위계화에 따른 사회적 주변화 인식 수준 비교

유형	사례수	평균 (4점척도)	순위합 (rank sum)	x2검증
‘국내출생-한국국적-남성’ (type1)	(88)	1.51	11,647.5	25.448***
‘국내출생-한국국적-여성’ (type2)	(116)	1.60	16,868.0	
‘국외출생-한국국적-남성’ (type3)	(18)	1.98	3,636.0	
‘국외출생-한국국적-여성’ (type4)	(30)	2.05	6,265.0	
‘국외출생-외국국적-남성’ (type5)	(19)	1.68	2,897.5	
‘국외출생-외국국적-여성’ (type6)	(29)	1.50	3,8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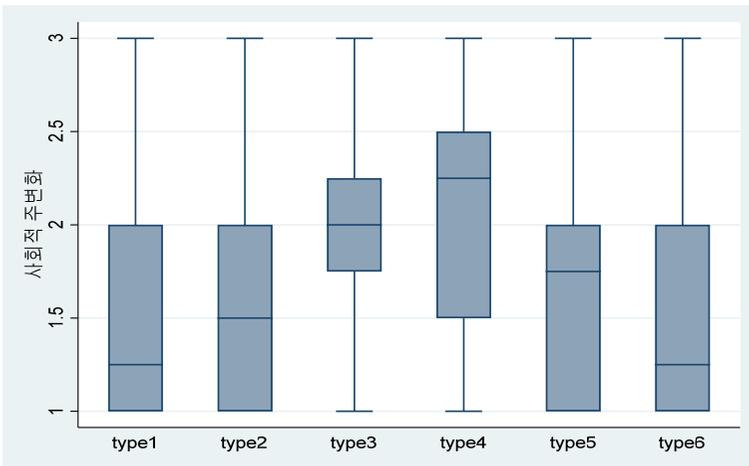
주 : *** p<0.01

사회적 주변화에 대한 인식은 젠더 요인보다 출생지와 국적 보유 여부의 요인이 교차했을 때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진다. 특이한 점은 같은 외국 출생

자라도 한국국적을 보유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 주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컸다. 이는 출신지와 국적보유 여부, 그리고 여성이라는 취약성이 교차하게 되면 체류안정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노동 불확실성, 사회적 보호의 불확실성 때문에 프레카리아트화(precarization)된 일상을 살기 때문에 사회적 주변화 인식이 가장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보다 시민적 위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국외출생-한국국적자’가 가장 부정적인 사회적 주변화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브루베이커(Brubaker, 2010: 65)가 지적한대로 공식적인 국가 성원권인 ‘국적’(legal nationality)을 취득하였지만, 대다수 한국 사회 구성원이 이주민을 ‘우리’(membership)보다 경계 너머에 존재하는 ‘타자’(the others)로 여기기 때문에 사회적 주변화 인식은 더욱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유연한 시민권과 주류사회로 상향이동을 위해 한국국적 취득에 따른 기대감이 크지만, 오히려 실제 삶에서 여전히 지속되는 차별적 시선과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기보다 불안정성과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시민적 위계화에 따른 사회적 주변화 인식 수준 비교



3. 비모수 회귀분석 결과

시민적 위계화 유형이 사회적 주변화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비모수 추정 방법인 커널 회귀분석(nonparametric kerne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커널 회귀분석 방법에서는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할 수 없고, 투입 요인 각각의 효과만을 검증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시민적 위계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주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등은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Model 1〉은 통제변수만 모형에 투입한 모델이다. 사회적 주변화에 가구소득과 일자리 여부만 유의미하였다. 즉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주변화에 미치는 평균적 효과는 부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준거 변수(일하지 않음)에 비하여 상용직과 비상용직 모두가 사회적 주변화 인식 수준이 높았다. 특히 고용 지위에 따른 효과는 일하는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사회적 주변화 인식이 부정적으로 높은 점은 주목해볼 만하다. 일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류사회와 현실 경쟁과 갈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예기치 않은 차별과 사회적 낙인의 누적된 부정적 경험(cumulative disadvantage)으로 상향이동이 제한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Model 2〉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시민적 위계화 유형을 투입한 모형이다. 분석 결과 ‘국외출생-한국국적-남성’, ‘국외출생-한국국적-여성’, ‘국외출생-외국국적-남성’, ‘국외출생-외국국적-여성’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회귀계수 값도 시민적 위계화의 위세가 낮아질수록 증가하고 있다. 즉 준거 변수와 비교할 때 국내 출생(type2)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사회적 주변화의 평균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유형은 중도입국청년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출생지, 국적 여부, 젠더에 따른 위계화가 사회적 주변화에 미친 평균적 효과에서 격차를 보였다. 중도입국청년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계층적 위계와 사회적 지위의 열악함이 한국사회에서 배제되고 주변화되었다는 인식으로 투영된 것이

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림 3〉은 〈Model 2〉를 기반으로 시민적 위계화 유형에 따른 사회적 주변화 인식을 시각화한 것이다. 연구 모형에 투입된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일자리, 외국출신 부모의 여부 변수를 중간값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시민적 위계화의 한계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그림 3〉은 일종의 서열변수로서 시민적 위계화 유형화의 위세와 사회적 주변화 인식이 부적(-) 관계를 맺고 증가하는 양상이다. 즉 시민적 위계화에서 불안정이 더욱 큰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사회적 주변화 인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년층의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이 가족 배경에 따라 상이하다는 계층화 가설(stratification hypothesis)과도 맥락이 맞닿아 있다 (Furlong et al., 2003).

〈표 6〉 시민적 위계화와 사회적 주변화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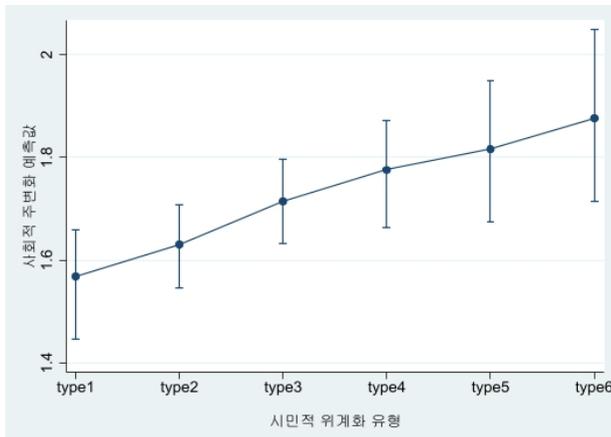
변수		Model 1	Model 2
평균	사회적 주변화	1.655*** (0.037)	1.653*** (0.037)
효과	연령	0.019 (0.015)	0.010 (0.013)
	교육수준	-0.056 (0.029)	-0.068* (0.029)
	가구소득	-0.068** (0.024)	-0.056** (0.019)
	일자리 여부		
	- 상용직	0.271** (0.101)	0.249** (0.111)
	- 비상용직	0.115* (0.053)	0.106* (0.058)
	외국출신 부모 여부		
	- 아버지만 외국 출신	0.102 (0.093)	0.084 (0.081)

〈표 6〉 시민적 위계화와 사회적 주변화의 관계 〈계속〉

변수		Model 1	Model 2
효과	시민적 위계화		
	- 국내출생-한국국적-여성(type2)		0.062 (0.035)
	- 국외출생-한국국적-남성(type3)		0.146** (0.055)
	- 국외출생-한국국적-여성(type4)		0.207* (0.082)
	- 국외출생-외국국적-남성(type5)		0.247* (0.104)
	- 국외출생-외국국적-여성(type6)		0.308* (0.129)
N(kernal obs)		295(295)	296(296)
R-squared		0.438	0.558

주 : 1) 일자리 여부의 준거 변수는 “일 없음”이고, 외국출신 부모의 준거 변수는 어머니만 외국출신임. 그리고 시민적 위계화는 “국내출생-한국국적-남성”이 준거 변수임
 2) Bootstrap estimate std. err. *** p<0.01, ** p<0.05, * p<0.1

〈그림 3〉 시민적 위계화와 사회적 주변화의 관계



V. 결론

지구화와 탈경계화에 따른 초국가적 이동의 증가는 영토-국민-주권이 일 치하는 국민국가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자가 증가하고, 이주의 정주화에 따라 사회의 구성원이 인종·민족적으로 다양화·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누구를 '우리 국민'으로 포섭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가적 영토 내에서 나고 자란 국민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유입된 이주민에게도 선별적으로 시민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국가 이주 관리 체계로 인해 이주민을 필요에 따라 포섭은 하되 차등적인 권리와 제한된 시민권 부여를 통해 위계화가 형성된다. 특히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을 경험하는 이주배경청년들은 한국사회에서 '청년'과 '이주배경'으로 인해 삶의 취약성이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이주민으로서 주변적 지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삶의 질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즉 이주배경청년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위계화된 시민적 권리로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고, 고립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이주 배경청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출신지, 국적, 젠더에 따른 시민적 위계화 유형이 사회적 주변화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본인의 이주배경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가 일상에서 귀속 의식과 사회 정체성과 상향이동에 대한 이동성에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는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주변화에 대한 인식은 예상보다 부정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의 일반 청년층보다 사회적 주변화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이는 이주배경청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과 사회적 낙인으로 주변적 위치를 경험하고 자랐기 때문에 사회적 상향 이동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주변화는 시민적 위계화 유형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 평균적인 효과는 시민적 위세

가 낮은 집단이 더 큰 주변화 인식을 보인다. 즉 국적 취득 여부는 국적을 보유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사회적 주변화 인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자신의 출생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른 차이가 주요한 요인이 된다. 일 예로 중도입국한 이주배경청년이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시민적 위계화의 편입 과정에서 사회적 배제와 불안감은 오히려 상승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사회적 주변화 인식에서 국외출생이라는 요인의 부정적 효과가 국적 취득으로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주배경청년의 시민적 위계화가 그대로 사회적 배제와 불안정성이라는 주관적인 인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중도입국청년의 경우 한국 입국 후 교육 기회 단절,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자원의 결핍 상태에 처하면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사는 삶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상향 이동에 대한 기대감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민적 위계화는 외국출신 부모 세대가 한국사회에서 경험한 계급적 지위가 자녀 세대에 전이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체류자격별, 특정 집단별로 분절된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권의 논지에서 '통합적'인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시민적 위계화의 편입 과정에서 불안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중도입국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적인 청년정책에서 '청년'의 대상을 '국적자'로 한정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법적으로 배제된 신분으로 자리 잡은 국적이 없는 중도입국청년의 경우에는 '정책 사각지대'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미 중도입국청년들은 본인들이 청년기본법과 지원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에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다.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청년기본법의 적용대상에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중도입국청년까지 포섭하는 전향적인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정부의 공식적 통계로 추적할 수 없었던 만 25세 이상의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시민적 위계화의 유형에 따른 사회적 주변화 인식의 차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령 범주에서 청년기본법이 정하는 청년층 모두를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게다가 사회적 주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민적 위계화 유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가구소득, 부모의 출신국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미진함도 있다.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년 등 국적에서 배제된, 다양한 범주에 속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주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추진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2021년 11월 5일 접수
2021년 12월 12일 수정 완료
2021년 12월 13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고은혜·배상률. 2017. “부모와의 별거경험이 중도입국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4), 211-232.
- 김도혜. 2012. “한국 이주배경 청소년 분류와 관련 정책의 한계점: 미국 사례와 비교.” 「현대사회와 다문화」 2(2), 305-332.
- 김민경. 2020.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준비에 대한 현상학적 융합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6), 249-258.
- 김민선·김재훈. 2021. “이주배경 청년들의 우울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개인·사회·환경적 변인 간의 관계.”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10(2), 141-170.
- 김민정. 2019.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정치정보연구」 22(1): 63-97.
- 김비오. 2019.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9(3): 408-436.
- 김수영·이성규. 2019.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에 가족 지지가 미치는 영향.” 「GRI 연구논총」 21(2), 51-73.
- 김수정. 2020.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본 한국 청년 빈곤의 특수성.” 「한국인구학」 43(2): 77-101.
- 김안나·홍현우. 2018. “청년 빈곤 및 고용실태 분석.” 「사회복지연구」 49(2): 93-124.
- 김이선·최윤정·동계연·신현옥. 2016.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김재희·박은규. 2016.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이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3): 257-284.
- 김지혜. 2020.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청년의 삶에 대한 생애사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3(2): 65-106.
- 김진희·이로미·권진희. 2021. “다문화배경 청년의 자기정체성에 관한 질적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4(1): 117-146.

- 김진희·이로미·권진희. 2021. “다문화배경 청년의 자기정체성에 관한 질적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4(1), 117-146.
- 김철효. 2021. “비국민과 이주 배경 국민은 한국 사회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주민 운동의 성찰과 전망.” 「경제와사회」 121-162.
- 박경숙. 2012. “탈북이주자 생애사에 투영된 집단적 상흔과 거시 권력구조.” 「경제와 사회」 95: 288-332.
- 박경태. 2005.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과 이주노동자 운동의 성격.” 「경제와사회」 88-112.
- 박상희. 2021.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규범적·정서적 포섭과 배제: 소속감 위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5(3): 67-112.
- 박수명. 2013.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관하여.” 「한국정책연구」 13(3): 113-131.
- 박우. 2011. “한국 체류 조선족 ‘단체’의 변화와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 「경제와사회」 241-268.
- 박응희. 2014. “직업능력개발에서의 상호문화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이주배경 청소년 동향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9(1), 147-166.
- 박지현. 2020. “청년세대 주거 빈곤 경험 대처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5(1): 143-159.
- 변금선·김기현. 201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 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527-554.
- 서준우·강우창. 2021. “이주민 증가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인식 변화: 경제적 불평등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5(2): 33-55.
- 석희정, 하춘광. 2015.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가족생활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교사회복지」 31, 1-35.
- 설동훈. 2020. “민족 위계화? 통일시대의 한민족과 타자들.” 「담론 201」 23(1), 7-60.

- 손인서. 2020. “중국동포 돌봄노동자의 경력이동: 연령화·인종화된 인식과 이주민 불평등.” 『경제와사회』 312-344.
- 송원일·유진이. 2020. “이주배경 귀화청소년의 한국인 정체성 갈등과 대응전략.”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5(2), 1-26.
- 신윤정. 2018.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배경 아동의 발생 및 성장 환경 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안진아. 2019. “사회계층 및 학벌에 따른 제약과 관참은 일간 관계: 일 자유 의지와 진로적응성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20(5), 133-153.
- 안창혜. 2016.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 -체류자격 구분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16(2), 93-132.
- 예동근. 2011. 「조선족 3세들의 서울이야기」 백산서당
- 예동근·오혜정. 2020. “중국동포청년의 세대이미지 변화연구.” 중국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15-326.
- 오성배·서덕희.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인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 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60(2), 517-552.
- 윤형준. 2019. “다문화 2세대의 성인 초기 발달과업 수행에 대한 지원 정책의 발전방향.” 『인문사회21』 10(6), 369-378.
- 윙티탄프영·김기화. 2018.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주 초기 적응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7(4), 79-102
- 이민경·이수정. 2013. “이주 가정 자녀 정책 해외 사례 분석 : 방향성과 실제.” 『현대사회와 다문화』3(1), 144-177.
- 이순미. 2018. “지방 중소도시 청년들의 다차원적 빈곤과 행복의 역설.” 『한국사회학』 52(4): 243-293.
- 이승윤·이정아·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365-405.
- 이은영·황혜원. 2016. “가족환경스트레스가 중도입국자녀의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4: 397-423.

- 이정은. 2012. “‘외국인’과 ‘동포’사이의 성원권: 재한조선족 사회의 지위분화에 따른 성원권 획득 전략.” 『경제와사회』 402-429.
- 전경숙. 2017.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준비와 정착계획에 관한 탐색적 연구.” 『GRI 연구논총』 19(1), 441-473
- 전의령. 2015. “선량한 이주민, 불량한 이주민’: 한국의 주류 이주·다문화 담론과 반다문화 담론.” 『경제와사회』 106, 238-270.
- 정수정·류방관. 2012. “독일의 이주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 『한국비교교육학회』 22(2), 47-77.
- 정영선. 2018. “북한이탈청년이 인식하는 차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9(4): 113-147.
- 정희정·김소연. 2014.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자녀의 사회연결망에 관한 사례 연구: 청소년 상담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831-853.
- 채소린. 2021. “중국 출신 이주청소년들이 경험한 초국적 불안정성-학력 중단 이후 교육 및 진로탐색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1: 177-211.
- 최영미·송영호. 2020.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초국가적 가족관계 및 새로운 관계구성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2(4): 189-213.
- 최혜지. 2019. 『이주민의 사회적 배제 - 세대 간 전이와 민족 계급화를 중심으로』 집문당.
- 한준성. 2017. “한국 이주노동레짐의 형성과 권리 결핍.” 『한국정치연구』 26(3): 303-332.
- 한준성·최진우. 2018. “이주민 환대 지수 (Hospitality Index) 지표체계 개발 연구.” 『문화와 정치』 5(1): 5-41.
- 홍진주. 2021. “청년니트의 사회적 배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0,349-354.
- Alba, Richard, Handl, Johann and Müller, Walter. 1994 “Ethnic Inequalities in the German School System.”, *MZES-Arbeitspapier/Working*

Paper Arbeitsbereich I, No 8: 115-153.

- Baur, Rupprecht S., 2000. "Schulischer Zweitspracherwerb bei Migrantenschülern - Theorie und Empirie, Deutsch als Fremdsprache." *Zeitschrift zur Theorie und Praxis des Deutschunterrichts für Ausländer* 37: 131-135.
- Bernt, M. & Colini, L. 2013. Exclusion, Marginalization and Peripheralization. Conceptual concerns in the study of urban inequalities: Conceptual concerns in the study of urban inequalities. Working Paper, Erkner, Leibniz Institute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Structural Planning. Douglass, R. P., Velez, B. L., Conlin, S. E., Duffy, R.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Bhugra, D., & Jones, P. 2001. "Migration and mental illness." *Advances in Psychiatric Treatment* 7: 216-223.
- Brubaker, R. 2010. "Migration, membership, and the modern nation-state: Internal and external dimensions of the politics of belonging."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41(1), 61-78.
- Crul, Maurice and Vermeulen, Hans, 2003. "The second gener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4): 965-986.
- D. England, J. W. 2017. "Examining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Decent work among sexual minorit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4(5): 550-559.
- Diefenbach, Heike. 2002. Bildungsbeteiligung und Berufseinmünd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aus Migrantenfamilien. Eine Fortschreibung mit Daten des Sozio-Ökonomischen Panels(SOEP), in: Sachverständigenkommission (ed.). 11. Kinder und Jugendbericht: Migration und Europäische Integration. Herausforderungen für

- die Kinder und Jugendhilfe. Munich: 9-70.
- England, J. W., Duffy, R. D., Gensmer, N. P., Kim, H. J., Buyukgoze-Kavas, A., & Larson-Konar, D. M. .2020. "Women attaining decent work: The important role of workplace climate in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7(2): 251-264.
- Esser, Hartmut. 2006. Sprache und Integration - Konzeptionelle Grundlagen und empirische Zusammenhänge. Wien: KMI Working Paper Series.
- Foster, M. 2000.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 to personal discrimination: Does coping make a differenc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0: 93-106.
- Furlong, M. J., Whipple, A. D., Jean, G. S., Simental, J., Soliz, A., and Punthuna, S. 2003. Multiple contexts of school engagement: Moving toward a unifying framework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practice. *The California School Psychologist*, 8(1), 99-113.
- Gang, Ira N. and Zimmermann, Klaus F., 2000: "Is Child like Parent? Educational Attainment and Ethnic Origin." *Journal of Human Resources* 35(3): 550-569.
- Hall, J. M., Stevens, P. E., & Meleis, A. I. 1994. "Marginalization: A guiding concept for valuing diversity in nursing knowledge development." *Nursing Science* 16(4): 23-41.
- Helmke, Andreas and Reich, Hans H., 2001. "Die Bedeutung der sprachlichen Herkunft für die Schulleistung. Empirische Pädagogik." *Zeitschrift zu Theorie und Praxis erziehungswissenschaftlicher Forschung* 15: 567-600.
- Karlsen, S., & Nazroo, J.Y. 2002. "Relation between racial discrimination, socialclass, and health among ethnic minority group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2: 624-631.

- Kristen, Cornelia and Granato, Nadia. 2007. "The educational attainment of the second generation in Germany." *Ethnicities*: 343-360.
- Liebkind, K., Jasinskaja-Lahti, I., & Solheim, E. 2004. "Cultural identity,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arental support as determinants of immigrants' school adjustments." *Journal of Adolescence Research* 19(6): 635-656
- Lockwood, D. 1996. "Civic integration and class formation."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7(3): 531-550.
- Luthra, Renee Reichl. 2010. Assimilation in a New Context: Educational Attainment of the Immigrant Second generation in German. ISER Working Paper 2
- Manstead, A. S. R. 2018. "The psychology of social class: How socioeconomic status impacts thought, feelings, and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7: 267-291.
- Marshall, Thomas H. 1964.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Garden City, NY: Doubleday.
- Marshall, Thomas H. 2009.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in Manza, J. and Sauder, M., eds., *Inequality and Society*,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Inc.
- McClintock, Ann. 1996. "No Longer in a Future Heaven: Nationalism, Gender and Race." *Becoming National*. Geoff Eley and Ronald Grigor Suny(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orris, L., 2002. *Managing Migration: Civic Stratification and Migrants' Rights*, London: Routledge.
- Morris, L., 2003. Managing contradiction: Civic stratification and migrants' righ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1): 74-100.
- Nauck, Bernhard and Diefenbach, Heik. 1997. *Bildungsbeteiligung von Kindern aus Familien ausländischer Herkunft: eine methodenkritische*

Diskussion des Forschungsstands und eine empirische Bestandsaufnahme, in: Schmidt, Folker (Hrsg.) *Methodische Probleme der empirischen Erziehungswissenschaft*. Baltmannsweiler: Schneider Verlag Hohengehren: 289-307.

- Pierson, John. 2002. *Tackling Social Exclusion* Routledge
- Riphahn, Regina T., 2003. "Cohort Effects in the Educational Attainment of Second-generation Immigrants in Germany: An Analysis of Census Data."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6(4): 711-737.
- Riphahn, Regina T., 2005. "Are there Diverging Time Trends in the Educational Attainment of Nationals and Second-generation Immigrants?" *Journal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25: 325-346.
- Graham Room. 1995.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Policy Press
- Sainsbury, Diane. 1996.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ol, D. H., and Skrentny, J. D. 2009. Ethnic return migration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 Chinese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Ethnicities*, 9(2), 147-174.
- Shafir, Gersho. Ed. 1998. *The Citizenship Debates: A Reader*.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iebert-Otto, Gesa. 2003. "Mehrsprachigkeit und Bildungserfolg, in: Auernheimer, Georg(Hrsg.) *Schieflagen im Bildungssystem. Die Benachteiligung der Migrantenkinder*. Opladen: Leske and Budrich: 161-176.
- Snel, E., Faber, M., and Engbersen, G. 2015 "Civic stratification and social positioning: CEE labour migrants without a work permit." *Population Space and Place* 21(6): 518-534.
- Sue, D.W., & Sue, E. 2003.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 and practice(4thEd.). New York, NY: John Wiley&Sons, Inc.
- Tokar, D. M., & Kaut, K. P. 2018. "Predictors of decent work among workers with Chiari malformation: An empirical test of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6: 126-137.
- Turner, Bryan S. 1986. *Citizenship and Capitalism: The Debate over Reformism*. London: Allen & Unwin.
- Wang, S., Li, A., Wen, K., and Wu, X. 2020. Robust kernels for kernel density estimation. *Economics Letters*, 191, 109138.
- Wenger, E. 1999.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nchester, M. and White, P. 1988. "The location of marginalised groups in the inner ci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6: 37-54.
- Worbs, Susanne, 2003. "The second generation in Germany: Between School and Labour Market."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4): 1011-1038.
- Yeh, C.J. 2003. "Age, acculturation, cultura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symptoms of Chinese, Korean, and Japanese immigrant youth."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9: 34-48.

Civic hierarchy and social marginalization of immigrant youth: focusing on the differences of nationality and place of birth and gender

Song, Young-ho

Department of Sociology, Dongguk University

Choi, Young-mi

Gyeonggido Family and Women Foundatio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civil hierarchy on the social marginalization of young adults with a migrant background. For this purpose, the Social Sciences Korea (SSK) Young Adults of Migrant Background Project Group's "2021 Survey of Young Adults of Migrant Background" was used along with a non-parametric estimation method. The major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respondents' attitudes towards social marginalization was not particularly negative, contrary to expectations, and in fact, was less negative than those of average Korean young adults. However, the pattern of social marginalization based on civil hierarchy showed a marked difference, notably that naturalized foreign-born residents (with Korean citizenship) held a distinctly negative attitude. The assumption is that these young adults of migrant background had naturalized in an effort to gain social mobility, flexibility, and a general ability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however, in the process of competing with the mainstream, the discrimination and stigmatization that they experienced may have left them with a largely negative view in the areas of equal opportunity and awareness of inequality. Lastly, the results of the non-parametric regression analysis, which controlled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 lower the level in the civil hierarchy, the higher the awareness of social marginalization. In other words, those of an objectively lower social status (due to Korean society's differential treatment of residents) had a higher level of subjective awareness around social exclusion, alienation, and the reality that upward social mobility was

largely closed off.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 argue that a more active inclusion policy—one based on "residency" rather than "nationality"—is needed to overcome current limitations in the segmented policy around "young adults with a migrant background."

Key words: immigrant youth, civic hierarchy, social marginalization, the non-parametric estimation

김영삼 정부 이후의 국방문민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김 경 필* · 남 윤 철**

요 약

이 글은 선출된 대통령의 책임하에 군이 아닌 비군인 출신 민간인들이 국방/안보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을 국방문민화라 규정하고, 문민정부 등장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국방문민화를 설명한다. 국방/안보정책 기획과 시행, 조율의 핵심 기구인 NSC에 주목해서 이것의 제도화와 정책결정 개방도를 기준으로 각 정부의 국방문민화 수준을 분석하고, 정부별 핵심 국방/안보정책에서 이것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살펴본다. NSC가 활성화되고 확장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였다. 경제위기 상황, 군과 국방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치적 타협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국방문민화를 진척시켰다. 그래서 청와대는 NSC 주도로 대북정책이나 군 지휘 및 통솔 방향의 변화, 국방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국방문민화가 약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며, NSC를 사실상 해체했고, 정책기획 및 결정에서 군의 영향력이 강화된 반면, 정책 조율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도입하고 NSC를 재구축했지만, 정책결정은 과거보다 폐쇄적으로 이루어졌다. 군 출신들이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주요 국방/안보 정책은 군의 선호와 일치하거나 군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다.

주제어: 문민화, 문민우위, 민군관계, NSC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제1저자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졸업, 교신저자

I. 문제 제기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표와 책임의 원리를 토대로,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 정치인들은 시민들에 제시한 목표와 비전, 공약을 바탕으로 관료들을 통솔하여 정책을 펴고, 법과 제도를 만든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의 민군관계에서 문민 우위를 관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즉 시민의 대표자들이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목적으로 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군은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전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자원과 폭력을 조직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학자의 지적처럼 군이 민간인에 복종하는 것을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Finer, 1975: 5). 문민 우위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며 많은 국가들이 군의 팽창과 쿠데타를 경험하게 되었고, 군을 통제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두 차례의 쿠데타와 오랜 군사독재를 경험한 한국에서도 문민 우위를 관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1961년 이후 처음 선출된 문민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은 군사정권을 뒷받침하며 군 내 요직을 독점해온 사조직을 집권과 동시에 해체하기도 했다.

민주주의 사회의 민군관계에서 문민이 우위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민간인이 군을 지휘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1) 선출된 이들이 국방/안보정책을 기획 및 시행하는 것과 (2) 예산, 인력과 조직을 관리하는 것을 뜻하고, (3) 군에도 예외 없이 보편적 법의 지배가 관철되는 것과 (4) 능력주의에 입각한 군 인사와 군 역할과 임무를 군사영역으로 제한하는 것도 함께 의미한다(Born, 2006; Bruneau and Tollefson, 2006; Rukavishnikov and Pugh, 2006; Pion-Berlin, 2011; Croissant, Kuehn, Lorenz, and Chambers, 2013; Kim, 2021). 즉 민주주의에서의 문민 우위는 특정 시공간에서 군과 국방/안보를 둘러싼 여러 부문에서 선출된 이들이 제도와 법, 정

치적 수단을 이용해서 군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민군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각 부문에 따라 불균등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Kim, 2021: 3-6).

이 글은 민군관계의 여러 부문 중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국방/안보정책 기획과 시행 부문에 주목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출된 정치지도자가 시민들에게 제시한 공약을 토대로 국방/안보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며 군을 지휘, 통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선출된 대통령의 책임하에 군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 비군인 출신 민간인들이 국방/안보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을 국방문민화라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논점을 토대로 김영삼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국방문민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NSC)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설명하려 한다. NSC는 대통령 자문기구인데, 여기에서 여러 관계 부처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모여 국방/안보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한다. 제도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NSC가 작동할 경우 국방/안보정책 기획 및 시행에 있어서 군이나 군 출신들이 지속적으로 장관 자리를 독점해온 국방부가 아닌 여타 부처들의 다양한 의사, 비군인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글은 NSC에 주목해서 김영삼 정부 이후 국방문민화가 일관성 있게 관철되고 있는지, 만약 변화가 발생했다면, 그것의 방향과 양상, 이유는 무엇인지 해명하려 한다.

한국의 국방/안보정책 기획과 시행을 둘러싼 민군관계, 문민화 연구는 그간 주로 해외의 연구자들이나 저널들이 주도해 왔는데(Jun, 2001; Bechtol, 2005; Kim, Liddle and Said, 2006; Croissant and Kuehn, 2009; Moon and Rhyu, 2011; Croissant et al., 2013; Kuehn, 2017; Kim, 2021), 연구들을 통해 우리는 다음을 알게 되었다. 첫째, 민군관계에서 국방/안보정책 기획과 시행의 주체가 중요하다는 것과 NSC가 이 부문에서 중요한 기구라는 것이다. NSC의 작동은 정책의사결정에서 군인이 아닌 문민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김대중 정부가 등장하면서 그간 법조문으로만 존재했던 NSC가 활성화되었고, 국방문민화 진척의 중요한 계기

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노무현 정부 시기에 NSC의 힘은 더욱 강해졌고, 정책의사결정에서 군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며 NSC를 사실상 해체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들이 밝힌 내용은 한국의 민군관계 설명에 매우 중요한 논점이고, 적지 않은 통찰을 우리에게 준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 첫째, 이 연구들은 국방/안보정책의 기획 및 시행이라는 주제에 깊게 천착하기보다는 민군관계 혹은 군의 민주적 통제를 다루며 여러 분석부문 중 하나로 이것을 제시했다. NSC를 대상으로 정교한 분석을 시행하지는 않은 것이다. 둘째, 이와 연관지어서 기존 연구는 NSC의 역할이나 구성, 영향력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이것의 존재 여부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자칫 NSC의 존재 여부가 국방문민화의 여부인 것처럼 판단할 수 있다. NSC가 존재하더라도 정책결정과정이 군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구조화된다면, 국방문민화는 진전되었다 하기 어렵다. 셋째, 각 정부의 주요 국방/안보정책에서 국방문민화가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국방문민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조직의 존재 여부 뿐만 아니라 각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들이 민과 군의 복합적 관계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넷째,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는 노무현 정부 이후에 국방문민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를 다룬 몇몇 연구들도 이 시기 NSC가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는 국방문민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시기임에도,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이 글은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방문민화 즉 국방/안보정책 기획 및 시행 부문의 문민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설명하려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NSC의 제도화와 작동, 국방/안보 정책결정의 개방 정도를 기준으로 국방문민화의 수준을 분석하고, 정부별 주요 국방/안보 기획 예컨대 국방개혁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한 위협 대응에서 이것이 어떻게 발휘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방문민화가 변화했는지, 변화했다면 변화의 이유와 방향, 양상을 설명하

려 한다. 그리고 시기별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크게 두 변수 즉 대북 관계와 북한의 도발과 같은 국내외적 상황, 청와대와 군, 국방부, 여야정당, 시민단체와 같은 주요 행위자들이 지향과 전략에 주목하려 한다. 글의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를 제기한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분석의 기초를 제시한다. 국방문민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소와 변화를 논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여기서 다룬다. 3장과 4장에서는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한다. 3장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를 다루고, 4장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의 국방문민화를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II. 국방문민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민군관계에서 문민우위를 달성하는 것이다. 선출된 시민의 대표자들이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목적으로 군을 통솔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 체제는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전문화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위계적 관료조직을 작동시켜, 사회 여타 세력이 사용할 수 없는 자원과 폭력을 집약적으로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차 대전과 냉전을 거치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민주화의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군사쿠데타나 민군관계에서의 군 우위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민우위는 단순히 선출된 군 통수권자가 군을 지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이 한 번 관철되었다고 해서, 문민우위가 무한정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에서의 민군관계는 다양한 부문에 걸쳐 나타나고, 주요 행위자들의 지향과 전략, 법과 제도적 맥락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Kim, 2021: 4-6).

민주주의 사회의 민군관계에서 문민이 우위에 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을 의미한다. 첫째, 군이나 군 출신 관료들이 아닌 민간인이 국방/안보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해야 한다(Croissant, 2004; Rukavishnikov and Pugh,

2006: 136; Born, 2006: 159-160; Croissant et al., 2013: 34; Kim, 2021: 4-5). 둘째, 선출된 이들이 예산, 인력과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Croissant, 2004; Rukavishnikov and Pugh, 2006: 136; Born, 2006: 159-160; Young, 2006; Giraldo, 2006; Bruneau and Goetze, 2006; Kim, 2021: 4). 정부 예산관리부처가 군과 국방부를 견제할 수 없고, 의회 국방위의 입법과 예산관리, 국정감사가 유명무실해지면 문민우위가 관철되기 어렵다. 셋째, 군에도 예외 없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한상희, 2014; 김경필·이수진, 2020; Kim, 2021: 4). 만약 사법부에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별도의 군사법원이 있고, 군이 기소와 수사는 물론 사법체계 전반에 개입할 수 있다면 군은 법의 지배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로울 수 있다. 넷째, 군 인사가 선출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군 역할과 임무는 군사영역으로 한정되어야 한다(Born, 2006: 159-160; Rukavishnikov and Pugh, 2006: 136-137; Bruneau and Goetze, 2006; Young, 2006; Giraldo, 2006; Croissant et al., 2013: 33; Kim, 2021: 5).

이 글은 민군관계의 여러 부문 중 첫 번째로 제시한 국방/안보정책의 기획 및 시행에 주목하려 한다. 국방과 안보는 국가의 주권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국가 존립의 근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민군관계의 여러 부문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민군관계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국방문민화, 즉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책임하에 군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 비군인출신 민간인들이 국방/안보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아닌 군이나 군을 대표하는 관료들이 국방/안보정책을 기획한다면, 이 체제는 민주주의라 말하기 어렵다. 민주화 이후 문민통치가 본격화된 김영삼 정부 이후 한국 국방문민화의 핵심적 제도장치는 바로 NSC이다.

사실 NSC는 1963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구로서 현행헌법에도 필수적으로 설치될 것이 규정된 헌법기관이다(대한민국헌법 제6호, 제87조, 1963. 12. 17. 시행.; 대한민국헌법 제10

호, 제91조, 1988.02.25. 시행). NSC는 대통령이 의장직을 맡고,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중앙정보부장을 위원으로 했는데, 제도상으로만 보면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여러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모여 국방/안보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는 군사정권 시기였기 때문에 문민통제 기구가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웠다. 이후 NSC는 1979년 2월 정책수립 및 조정기능이 없어지고, 1980년대 들어 사무국과 행정실이 폐지되며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었다(박재하·정길호, 1988: 178-179). NSC는 김대중 정부가 등장하고, 사무국과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며 활성화되었고, 참여위원도 늘어나게 되었다.

NSC를 준거로 우리는 국방문민화, 즉 국방/안보정책의 기획 및 시행이 문민주도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NSC가 작동할 경우 이 부문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군 출신들이 계속 장관을 해오며 시민이 아닌 군을 대표하는 경향이 강했던 국방부나 군의 의도나 선호만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이외의 여타 부처들, 비군인들의 생각과 선호도 정책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고, 대통령도 보다 개방적인 환경에서 여러 변수를 고려하며 국방/안보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다(Jun, 2001; Bechtol, 2005; Kim et al., 2006; Croissant and Kuehn, 2009; Moon and Rhyu, 2011; Croissant et al., 2013; Kuehn, 2017; Kim, 2021: 8-9).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NSC 제도화는 국방문민화의 중요한 변수인데, 제도화 분석을 위해서는 NSC 법제화와 하위기구인 상임위원회와 사무처 작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NSC 관련 법령이 완비되고, 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가 확대될 경우 국방문민화는 강화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NSC 역할의 범위도 고려해야 한다. NSC의 역할이 확대되어 대통령 자문은 물론 국방/안보정책 통합 및 조정으로 확대될 경우 국방문민화는 강화될 것이다. 정책 기획과 시행, 조율을 둘러싼 주요 의사결정이 NSC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NSC 법령이나 하위기구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그리고 NSC 역할이 축소될 경우 제도화는 멀어지고 국방문민화는 약화

될 것이다. 국방/안보정책을 둘러싼 주요결정은 별다른 제도적 기반 없이 군이나 군 출신이 수장인 국방부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국방문민화는 NSC 제도화 여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제도화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결정의 개방 정도이다. 설령 NSC가 제도화되었다고 해도, NSC사무처가 소규모이고, NSC 전체나 상임위원회 구성원, 그리고 국방부장관과 NSC상임위원장 같은 핵심 주요 직위가 군 출신 엘리트들로 채워져 있다면, 국방문민화는 강하다고 할 수 없다. 군 출신 소수의 엘리트들이 주요 직책에서 정책결정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문민화는 NSC의 제도화와 함께 NSC사무처의 규모가 늘어나고, 상이한 배경과 지향을 가진 민간인들이 NSC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개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때 진전된다. 아래의 <표 1>은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NSC와 국방문민화

구분		국방문민화	
		강화	약화
제도화	법령	법제화	폐지
	하위기구	상임위	축소
		사무처	확대
	역할 범위	확대	축소
개방도	구성	군 출신 감소	군 출신 증가
	부서 규모	확대	축소

정부별로 국방문민화가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기별 제도 및 정책결정 개방 정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부 집권의 주요 국방/안보정책 기획과 시행을 분석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에서 중점과제로 시행했던 국방개혁 정책이나 전시작

전통제권을 둘러싼 이슈, 북한 위협 대응에서 군의 지향과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선출된 정치인 즉 청와대나 여당이 주도권을 갖고 문민우위를 관철시켰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국방문민화는 기본적으로 민과 군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특정 시기 국방문민화가 강화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고, 반대로 국방문민화가 약해졌다고 문민우위가 다시 관철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국방문민화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주목해야 한다(Kim, 2021: 5). 우선,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역사적 조건이다. 사실 북한과의 대치는 군에 두 가지의 상반된 효과를 동시에 준다(Croissant and Kuehn, 2009: 211; Moon and Rhyu, 2011: 266). 군은 대치상황을 근거로 조직적 특수성을 주장하며 문민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 반면에, 북한이라는 분명한 외부 위협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남북대치 상황 자체가 민군관계를 특정 방향으로 이끈다고 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무력충돌 같은 국방 및 안보에 직접적이면서도 큰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인데, 이때 정부와 군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국방문민화 양상은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1997년 IMF 경제위기와 같은 사회전방위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사건도 국방문민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국방문민화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의 지향과 전략이 중요하다. 청와대와 군, 국방부, 여야 정당, 시민사회의 단체들이 어떤 지향을 갖고 어떤 전략을 펴는지에 따라 국방/안보정책 기획과 시행을 둘러싼 의사결정과 제도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청와대와 집권당이 집권 기간 동안 국방문민화에 어떤 지향과 전략을 갖고, 어느 정도의 자원을 동원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군과 군을 대표해온 국방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해당 시기 세력 간 힘의 관계가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따라 NSC의 제도화 정도나 역량, 기능, 정책결정과정의 개방성이 변화할 수 있고, 국방문민화를 둘러싼 행위자들 혹은 세력 간 쟁투의 장 역시도 지속적으로 재편될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논점을 바탕으로 3장과 4장에서는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방문민화 즉 국방/안보정책 기획 및 시행 부문의 문민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Ⅲ. 국가안전보장회의 활성화와 국방문민화 강화

1. 김대중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활성화

군사정권 시기 대통령은 군을 통제하고 국방/안보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제도적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정책결정은 군 통수권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국방부와 군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유명무실하던 NSC는 1981년 11월에는 사무국이, 1986년에는 행정실이 폐지된 이후, 거의 개최되지 않았다(박재하·정길호, 1988: 178; 국방대학원, 1995: 65; 국회국방위원회, 1998: 3). 민주화 이후에도 이러한 양상은 지속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군 복무 시절 형성한 ‘하나회’ 같은 사조직이나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군을 직접 통제할 수 있었고, 국방/안보정책 결정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 주도로 전개되었다. 국회논의 단계에 와서야 국방/안보정책 결정에 문민이 참여할 수 있었다(김동한, 2011: 70-71; 국회사무처, 1990: 5-7; 권영근, 2013: 257-294).

김영삼 정부 시기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은 민군관계에서의 문민우위를 강력하게 주창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은 주로 군조직 내부 인적청산과 인사문제 해결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군내 사조직 해체나 인사개혁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국무총리행정조정실, 1995: 284; 공보처, 1997: 70-72), 국방문민화 부문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는 국방정책이나 남북관계에서 이전 정부와 유사한 정책 지향을 가졌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다(Kuehn, 2017: 159-160). 실제로 NSC는 세 차례 소집에 그쳤고, 국방/안보와 관련된 논의

는 안보관계장관회의, 통일관계장관회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등 법적 근거가 없는 한시적 협의체에 의해서 수행되었다(공보처, 1992: 560-567; 국방대학원, 1995: 65; 국회국방위원회, 1998: 3; 김종대, 2010: 204-211).

김대중 정부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변하게 되었다. 민군관계에서 문민 우위의 중요성을 당선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김대중은 햇볕정책으로의 대북정책 전환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에서 문민 우위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했다. 군은 노태우 정부 시기에도 유화적인 대북 정책에 반발했기 때문이다(제148회 제3차 국회본회의회의록: 3; 제154회 국회 제4차 국방위원회 회의록: 5-6; 이정철, 2012: 139). 청와대와 여당은 NSC를 활성화해서 군을 대표해온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정책라인을 구축하여 대통령의 재량을 확대하려 했고, 새로운 기구를 이용해서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조율하려 했다(Jun, 2001: 134; Croissant and Kuehn, 2009: 199; Kuehn, 2017: 160). 이는 대선공약과 선거승리 후 인수위원회 주요 국정과제로 구체화되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8: 275;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998: 93-94).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생각이 그대로 관철될 수는 없었다. 먼저 IMF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 사회적 고통분담을 이야기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NSC를 활성화해서 정부 규모가 커지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NSC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내정자 시기 인터뷰에서 작은 정부와 사무처의 확장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교안보수석실을 중심으로 하고, NSC 사무국은 제한적으로 운용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동아일보, 1998.02.12.). 청와대는 NSC 활성화에 부정적이었던 군과도 정치적 타협을 했다. NSC를 외교, 안보, 국방정책 조정 및 자문기구로 규정, 이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권한을 갖지 않게 해서 군의 권한이나 제도적 이익을 크게 훼손하지 않게 했다(Kuehn, 2017: 160). 청와대는 무기도 입부터 세부 작전에 이르는 여러 부문에서 군의 자율성을 이전처럼 인정해주었고, 군은 IMF 경제위기로 사회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출된지 얼마 안 된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가 없었다.

정부와 여당은 결국 「국가안전보장회의법」과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 관한규정」을 개정해서 NSC의 정책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상임위원회와 사무기구를 설치했다(국가안전보장회의법, 법률 제5543호, 1998.05.25. 시행). NSC 제도화가 크게 진전되었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NSC 운영을 위해 국방, 안보, 외교와 연관이 적은 재경부, 내무부 장관을 제외 NSC 위원을 8명으로 조정하고, 상임위원회는 안보, 외교, 통일, 정보 담당부처의 장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이것은 정책결정 개방성을 이전보다 크게 증가시킨 조치였다. 기존에 이 부문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외교통상부 장관, NSC 사무처장을 겸직하게 된 외교안보수석, 통일부 장관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통일부 장관을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 시기 변화를 잘 보여준다. 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NSC에서는 군 출신이 39%를 점유하였고, 상임위에선 40%를 점유하였다. 주요 직위인 상임위원장과 국방장관 만을 살펴보면 군 출신 점유율이 더 높아져서 김대중 정부 시기에 평균 80%를 점유하였다¹⁾).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수석에 군 출신 인사를 임명하긴 했지만, 전역 후 정치활동을 통해 정무적인 역량을 배양한 인사, 군이 아닌 정부와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을 등용했다. 상임위원회 이외에도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실무조정회의와 정세평가회의도 설치되었다. 폐지 이후 17년 만에 다시 설치된 사무처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처장을 겸임하고 사무차장(1급), 위기관리실, 정책조정부, 정책기획부, 총무과 형태로 12인의 상근자를 두어 안보전략의 기획 및 조정, 위기에방·관리대책의 기획, 군비통제 등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활동을 보조하게 되었다(제14조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5808호, 1998.06.08.

1) 「대한민국헌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1.12.04. 확인); 통일부/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 역대장관 소개 (각부처 홈페이지); 국가정보원 역대원장 소개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국정홍보처. 2003. 『국민의정부 5년 국정자료집 제4권 -대통령편 일지편-』, 402.

시행).

NSC가 활성화되면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NSC는 실질적인 의사 결정 권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의 외교, 국방, 안보정책을 고안하고 조율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이제 NSC에서 외교, 안보, 국방정책을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국방부의 정책 제안을 감독하고 정보를 대통령에 전달했다(Croissant et al., 2013: 71; Kuehn, 2017: 156). 청와대 주도의 변화는 국방백서에도 나타났다. 첫째, 이 시기 국방백서는 1997년과 달리 안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군사적 위협 이외의 내용도 담고 있다(국방부, 1997: 1998: 19-20; 1999: 20-21). 둘째, 정책 목표에도 냉전 대결 구도 해체, 화해와 협력과 같은 햇볕정책이 반영되었고,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논하기도 했다(국방부, 1997: 22; 1998: 51-52). 셋째, 정책의 기본방향 중 하나도 이전의 “신뢰받는 국군”에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국민의 군대”로 바뀌었다(국방부, 1997: 68-69; 1998: 54-55).

하지만 이 시기 국방문민화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이기도 했다. 국방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방부가 갖는 우위는 지속되었다. NSC는 군 내부나 군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부문에 개입하지 않았다(Kuehn, 2017: 160). 전략 계획, 위협 판단, 예산 할당, 무기 획득뿐만 아니라 국방개혁에서도 군은 자율성을 유지하고 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Croissant et al., 2013: 71). 김대중 정부는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며 군 규모를 절감하고, 현대화하는 한편 군비축소와 국방부 재조직화를 추구했다. 하지만 군은 북한의 위협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반대했다. 특히 주된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육군이 강하게 저항했고, 한미연합사령관도 이에 반대하면서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김동한, 2011: 78-79; Kuehn, 2017: 156).

2.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확장

대선 승리로 정권을 재창출한 여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NSC를 확장하려

했다. 사실 여당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NSC 확장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제16대 국회 212회 제3차 국방위원회회의록, 9; 225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10-11; 6차 국방위원회회의록: 6, 제232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26-27). 첫 번째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개념을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 포괄적 위기관리 기관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국방과 안보 부문에서 NSC의 역할이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것이었다. NSC는 군사력 관리와 국방재원 사용, 국방정책 방향 설정, 포괄적인 국방기획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NSC는 규모가 작은 데다 구성원들도 파견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연속성도 낮은 상황이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NSC를 실질적인 외교, 국방, 안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으로 확대해서 국방문민화를 강화하자는 자문위원들의 생각에 공감했고,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 안으로 연결되었다(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69-70, 72; 이종석, 2014: 50-51). 그리고 이들의 생각은 당대의 남북관계 및 대북정세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동된 것이었다. 북핵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인수위 인사들은 NSC확장을 통해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했다(신동아, 2004.02.27.).

청와대는 결국 집권 초기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포괄적 안보개념을 반영한 정책 기획조정기능 강화와 제도적 정책결정체계 확립을 목표로 제시하며 NSC를 확대했다(대통령비서실, 2004: 198; 국가안전보장회의, 2004: 76-77).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해서 정책결정의 개방성도 확대했다. NSC 상임위원회에 외교보좌관과 국방보좌관을 배석하게 했고(제8조), 상임위 위원장 선정에 대통령 재량권을 확대했다(제10조). 상임위 기능을 대폭 확대해서 외교안보관련 중장기정책 수립조정, 현안정책 및 업무 조정, 안보 관련 정보의 종합 및 처리체계관리, 국가위기 예방·관리대책의 조정을 등도 할 수 있게 했다(제14조). 업무확대에 발맞추어 조직도 확대되었다. 정보관리실과 위기관리센터를 추가하였고, 관리자직급 상향과 인원 확대도 진행되었다(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7944호, 2003.03.22. 시행). NSC 사무처를 45명 규모로 크게 확대하고 차관급 사무차장을 신설했으며, 관리관급을 1명에서 3명으로, 실무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별정직 3~5급을 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보강하였다. NSC와 청와대의 업무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에 통일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추가로 배석시키기도 했다. 군과 지향이 다른 민간인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전보다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NSC는 확장되었고, 주요 의사결정 행위자에 군 출신 인사들을 제한적으로 임명되었다. NSC에서 군 출신 인사 점유율은 이전보다 감소한 21%였고, 상임위에서도 20%까지 감소하였다. 국방부장관만 군 출신을 임명하면서 주요 직위 군 출신 비율도 50%로 감소하였다²⁾. 게다가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군 출신 주요 인사들은 모두 전역 후 7년 이상 민간 활동을 경험한 이들이었다. <표 2>는 지금까지 논의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NSC 제도화와 개방도 변화추이를 요약한 것이다.

<표 2>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NSC 변화

구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제도화	법령	○	○	○	
	하위기구	상임위	X	○	○
		사무처	X	○	○
	역할 범위	미운영	자문	자문, 통합조정	

2) 「대한민국헌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1.12.04. 확인); 통일부/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 역대장관 소개 (각부처 홈페이지); 국가정보원 역대원장 소개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국정홍보처. 2008.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8 일지/자료』, 111-112, 121, 123.

〈표 2〉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NSC 변화 (계속)

구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개방도	부서 규모	NSC 사무처	-	12	46
		안보실	-	-	-
	구성	NSC	10	8	8
		(군 점유율 ¹⁾)	-	39%	21%
		상임위	미운영	6	7
		(군 점유율)	-	40%	20%
		주요직위 ²⁾	-	80%	50%

주: 1) 군 점유율은 재임기간 동안 NSC와 상임위 위원 중 군 출신 인사 비중 평균.

2) 주요 직위는 상임위원장과 국방장관에 대한 재임기간 중 평균 군 출신 인사 비중.

자료: 「대한민국헌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1.12.04. 확인); 통일부/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 역대장관 소개 (각부처 홈페이지); 국가정보원 역대위원장 소개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국정홍보처. 2003. 『국민의정부 5년 국정자료집 제4권 -대통령면 일지편-』, 402; 국정홍보처. 2008.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8 일지/자료』, 111-112, 121, 123.

국방부와 군은 반발했고, 야당 역시 자문기관이 조정과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월권이자 권한 침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신동아, 2003.07.28.;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2005; 이종석, 2014: 277-282).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입법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여론을 동원하는 것 말고는 없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 입법을 통해 사무처를 신설하면서, 사무처의 규모와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이다. 2005년 국회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자 정부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해 말 청와대에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을 신설하고, 여기에 외교안보정책 조정기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NSC의 기능을 조정했다.

NSC가 확대되면서 국방문민화는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NSC는 국방/안보

정책의 기획 및 조정, 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이 커졌고, 상대적으로 이 부문에서 군의 역할은 줄어들었다(Bechtol, 2005: 625; Croissant and Kuehn, 2009: 199; Moon and Rhyu, 2011: 259; Croissant et al., 2013: 74). 대통령이 신뢰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NSC에 들어갔고, 외교, 국방, 안보의 거시적 지향과 구체적인 정책들이 NSC에서 논의되고, 모니터링되었다. 대통령은 국방장관과 군 관계자에게 주요 국방문제를 보고할 때 NSC를 반드시 거칠 것을 지시했고, NSC의 지위는 대통령으로의 보고라인을 확고히 확보하게 되면서 크게 올라갔다(Bechtol, 2005: 625; 임종권, 2019: 94). 미사일 방어 참여 결정에서 대통령이 국방부의 제안을 거절한 사례는 민군관계에서 대통령의 입지나 문민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Croissant et al., 2013: 74; Kuehn, 2017: 156, 164).

국방문민화 강화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인 국방/안보정책이슈였던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서도 드러난다. 우선 국방개혁을 살펴보면, NSC는 국방부와 함께 정책의 구상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중요한 행위자로 활동했다(국가안전보장회의, 2004; 국방부, 2006: 36-37;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 21). 국방개혁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방발전자문위원회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자문위에는 군출신 전문가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NSC안보전략실장이 참여하고 있었다(한국경제, 2005.03.14). 물론 정부의 국방개혁안은 국회에서 육군 출신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결과 구체적인 시한과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한조건을 포함하여 입법되었지만(제258회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331-34;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 48-49), NSC 확대의 영향은 적지 않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도 NSC는 국방부와 논의를 거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감축, 자주국방 강화에 대한 대책안을 대통령에 보고했고, 전환시점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논의의 한 축을 담당했다(대통령비서실, 2006: 396; 이종석, 2014: 111). 야당과 예비역, 전직 관료로 구성된 단체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강하게 저항했지만, 미국의 국제전략 변화와

대통령의 의지가 결합되면서 당초 의도대로 결정되었다(한국국방안보포럼, 2006; 김현, 2007: 57; 국방부, 2006: 89-90). 그 밖에도 NSC는 심리전 수행에 있어서 군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각을 세웠고, 이라크파병 결정에서도 주도권을 갖고 부처 간 조율 및 정책 결정에 나섰다(제248회 국회 제3차 국방위원회 회의록; 서보혁, 2015: 264).

이 시기 국방문민화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방/안보 부문에서의 문민우위는 제한적이었다. 문민화가 진전되지 않아서, 대부분 군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았던 국방부는 여전히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다수의 기술적 결정, 예를 들어 무기획득이나 군 전력구조와 연관된 영역에서의 결정은 국방부에서 주로 내려졌고, 군 인사와 조직과 관련된 결정은 국방부의 책임 하에 있었다(Kuehn, 2017: 156-157). 아울러 야당은 당시 NSC의 역할이 위헌이고 불법이라며 이것이 확대되는 것에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데(의안번호 170925,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 제248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2-3), 이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뜻을 펼치게 된다.

IV.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해체 및 재구축과 국방문민화 약화

1.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해체

대선에서의 압도적 승리와 함께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국방문민화보다는 정부의 축소와 경제성, 국방 효율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들은 전략목표 중 하나로 미래지향적 선진안보체계 구축을 제시했는데, 여기에서도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국방역량 강화를 주장했다(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65; 대한민국 정부, 2008: 90-93; 청와대, 2009: 35, 39). 이것은 대통

령의 생각인 동시에 노무현 정부의 국방문민화 기조에 비판적이었던 여당, 성우회, 재향군인회 등의 생각이기도 했다(Kuehn, 2017: 157).

사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는 국정 대부분 영역에 일관되게 나타난 것이었는데, 국방/안보 부문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는 시민들의 정권교체 열망과 야당의 붕괴를 등에 업고, 집권 초기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전 정부와 반대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해서 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폐지한 것이다(국가안전보장회의법, 법률 제8874호, 2008.02.28. 시행). 정부는 NSC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숫자를 9명으로 확대했지만, 상임위원회가 폐지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도 폐지된 NSC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NSC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후반 정책조정기능이 이관된 청와대 조직도 크게 축소되었다.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통령실장 휘하에 외교안보수석실을 설치하였다. 조직 축소와 함께 업무참여 인원도 크게 조정되었다. 외교안보통일 업무를 수행하던 비서관 역시 대외전략, 외교비, 국방, 통일비서관만 유지되었다. 아울러 NSC 상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해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와 실무조정회의를 설치했다(전봉근, 2008: 8).

NSC가 사실상 사라지고 청와대 정책실이 축소되면서 국방문민화는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대통령은 NSC 대신 국방부 및 군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국방/안보 부문 국정을 수행했는데, 이것은 정부 기관 간의 상호작용과 조율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책형성 및 결정에서 군의 영향력과 리더십을 강화시켰다(신동아, 2008. 01. 09; Croissant et al., 2013: 75). 전임 정부들이 NSC와 청와대 조직을 중심으로 전개한 국방문민화 강화 추이에 역진하는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선택은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의 좌초로 귀결되었다. 총괄조정기구의 부재로 인해 군 내부 갈등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되며 국방개혁이 좌절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재정절감과 국방 효율화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추진하려 했고, 대통령 측근을 국방차관에 임명하며 국방부를 통제하려 했다(이양구,

2014: 357). 하지만 국방개혁은 지지부진하게 전개되었고,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이 연이어 발생하자, 개혁의 방향은 국방부 주도로 군 상부구조를 개편하는 쪽으로 변했다(김기원·이상현, 2020: 134). 그러나 군 상부구조 개편은 육군을 제외한 해군과 공군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들에 따르면 개혁안은 기존 육군 중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이양구, 2014: 363-367). 조정기구의 부재 속에서 군 내부 갈등은 국회 논의 과정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해군과 공군 예비역들은 개혁안이 민군관계에서 문민우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개혁안에 반대했고, 그 결과 군 상부구조 개편은 실현되지 못했다(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방부, 「상부지휘구조개편대토론회」, 2011.06.01.).

위기대응 및 관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외교, 국방, 안보를 아우르는 조정기구와 위기대응부서를 축소하다보니,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늑장보고와 부적절한 대처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것이 제도적 문제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고, 상황실장 직급을 비서관으로 상향하고, 국가위기상황팀을 국가위기상황센터로 개편하는 것으로 대응했다(정찬권, 2009: 67).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전방위적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국가위기가 아닌 국방문제로 인식, 안보관계 장관회의와 국방부 지원을 중심으로 대응했는데, 보고가 늦은 것은 물론이고, 정보분석과 위기대처 및 관리에서 리더십 부재, 컨트롤타워 미흡, 자군중심주의 등의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조승연, 2010: 173-174; 강태호, 2010: 256; 윤종성, 2011: 171-172; 대한민국 정부, 2011: 41-44; 이채언, 2012: 11-12).

이명박 정부는 사건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안보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국가위기관리실을 확대해야만 했다. 국가위기관리실은 수석비서관급을 실장으로 정보분석, 위기관리, 상황 팀을 두고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태로 확대되었다. 당초 정부는 작은 정부, 재정절감, 국방 효율화를 주장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NSC를 형해화하고 청와대

정책실을 크게 축소했지만, 북한의 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위기대응 및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자, 국방/안보를 청와대가 주도해서 국방/안보를 관리하는 기구를 조금씩 강화해야만 했던 것이다.

2.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재구축

위기대응 및 관리 실패를 경험한 여당은 기존 방침을 바꿔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외교, 국방, 안보 부문을 총괄조정할 국가안보실 도입을 공약했고, 정권 재창출 후에는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며 국가안보실을 설치하고, NSC를 확장하려 했다(새누리당, 2012: 356-358;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184).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대응과정 평가를 바탕으로 외교, 국방, 안보를 아우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국가안보실 신설 등에 영향을 준 초대 외교부 장관은 NSC에 근무한 경력도 있었다. 그리고 집권 초인 2013년은 북한과의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였다(주간동아, 2012.11.12.; 2013.01.28.; 서주석, 2014).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설치하고 2014년 1월 법률개정을 통해 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다시 개설하였다(국가안전보장회의법, 법률 제12224호, 2014.01.10. 시행;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075호, 2014.01.10. 시행). 사실상 노무현 정부 시기의 제도적 틀로 회귀한 것이었다.

군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와 달리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는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등장한 정권의 집권 초기라는 점, 과거의 경험이 존재한다는 점도 있었겠지만, 이들이 반발하지 않은 큰 이유는 바로 군 출신들이 중요한 위치에서 국방/안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에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외교, 국방, 안보 부문 국정에서 군 출신에 일을 맡기는 것을 선호했고, 이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실제로 국방안보추진단 형태의 군 예비역이 구성한 자문기구를 인수위에 참여시켰고, 집권 후에는 외교안보 참모 다수를 군 출신으로 임명했다(주간동아,

2013.01.07.; 신동아, 2014.02.20.).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NSC 구성원의 변화를 보면 국가안보실 1, 2차장이 참여해서 위원이 12명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출신 비중은 노무현 때보다 높은 25%로 증가하였다. 수가 9명으로 증가한 상임위원회에서도 군 출신 비중이 31%로 증가하였다³⁾. 상임위원회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인원들이 군출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출신 비중이 증가한 것은 기존 중요 직위에 군 출신 기용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방부장관 뿐 아니라 NSC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국가안보실장과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정원장에도 군 출신을 임명했다(시사저널, 2013.08.07.). 아울러 국가안보실과 NSC 사무처 참여 인원도 안보실 22인, 사무처 4인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의 46명보다 줄어들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졌다(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시행). 정책결정과정의 개방성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표 3〉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 NSC 변화

구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제도화	법령	○	○	○	○	○	
	하위기구	상임위	X	○	○	X	○
		사무처	X	○	○	X	○
	역할 범위	미운영	자문	자문, 통합조정	미운영	자문	

3)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안보실 직제」,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1.12.04. 확인); 통일부/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 역대장관 소개 (각부처 홈페이지); 국가정보원 역대원장 소개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제18대 대통령 청와대 홈페이지 (<http://18president.pa.go.kr/>), 대통령기록관 기록컬렉션 역대 대통령 웹기록 제18대대통령 (<https://www.pa.go.kr/portal/webSite/webSite06.do>).

〈표 3〉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 NSC 변화 (계속)

구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개방도	부서 규모	NSC 사무처	-	12	46	-	4
		안보실	-	-	-	-	22
	구성	NSC	10	8	8	8->9	10->12
		(군 점유율 ¹⁾)	-	39%	21%	21%	25%
		상임위	미운영	6	7	미운영	9
		(군 점유율)	-	40%	20%	-	31%
		주요직위 ²⁾	-	80%	50%	-	100%

주: 1) 군 점유율은 재임기간 동안 NSC와 상임위 위원 중 군 출신 인사 비중 평균.

2) 주요 직위는 상임위원장과 국방장관에 대한 재임기간 중 평균 군 출신 인사 비중.

자료: 「대한민국헌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안보실 직제」,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2021.12.04. 확인); 통일부/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 역대장관 소개 (각부처 홈페이지); 국가정보원 역대원장 소개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제18대 대통령 청와대 홈페이지(<http://18president.pa.go.kr/>), 대통령기록관 기록컬렉션 역대 대통령 웹기록 제18대대통령(<https://www.pa.go.kr/portal/webSite/webSite06.do>); 국정홍보처. 2003. 『국민의정부 5년 국정자료집 제4권 -대통령편 일지편-』, 402; 국정홍보처. 2008.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8 일지/자료』, 111-112, 121, 123; 대한민국정부, 2013.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12 국정자료, 재임일지·이록·인사』, 430-432, 438, 440, 462, 464, 538, 543-544, 546-548.

NSC가 다시 확대되고 국가안보실이 가동되었음에도 이 시기 중요한 국방/안보 부문 결정은 군과의 갈등 없이 정책화되었다. 당대의 중요한 현안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사드(THAAD) 도입 결정 모두에서 청와대와 국방부, 군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했고, 그 결과 별다른 갈등 없이 일이 전개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의 경우 당초 정부는 원안대로 전환을 추진하려 했지만, 북한의 도발강화를 이유로 재연기 논의를 진행했다(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415; 국방부, 2014: 21-22). 재연기 논의는 예비역 단체들의 지지를 받으며, 노무현 정부 시기와는 대조적으로 별다른 논쟁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문연철, 2013: 262; 정옥식, 2020:

227). NSC 상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국정원장은 모두 육군 4성 장군 출신이었다. 물론 이 시기 군 출신의 NSC 참여 비중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육군 4성 장군 출신들이 정책결정의 핵심을 차지한 것은 문민정부 이후 최초의 일이었다(신동아, 2013. 12.20.; 정육식, 2020: 230-231).

사드도입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하여 NSC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정이 이루어졌고, 외교부 장관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었다(제344회국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22, 36; 제346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3-4; 주간경향, 2016.07.26.; 조경환, 2019: 119-120, 132, 148). 그리고 정책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경제부처 등 타 부처가 배제되기도 했다(제343회국회 예결특위회의록 제4호: 2, 47). 사드도입을 군사적인 결정으로 여기고, 신무기 도입에 호의적인 군의 선호대로 일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도 군의 자율성은 증대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적극적 억제 및 군의 자율권 강화 기조를 계승하며 능동적 억제전략을 제시했다(국가안보실, 2014: 46). 이 전략은 선조치 후보고,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기조로 하는데, 비례성과 원점타격에서 벗어나 공격원점과 지휘세력까지 타격하겠다는 접근이다(박형중·전성훈·박영호·김영호·윤은기·전재성, 2013: 45). 능동적 억제전략을 통해 군의 자율성은 더욱 확장되었고, 이것은 선제적인 경고사격 활성화에 따른 휴전선에서의 충돌 증가로 귀결되었다(동아일보, 2015.05.17.).

V. 결론

이 글은 선출된 대통령의 책임하에 군이 아닌 비군인 출신 민간인들이 국방/안보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을 국방문민화라 규정하고, 문민정부 등장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국방문민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설

명했다. 국방/안보정책 기획과 시행, 조율의 핵심 기구인 NSC에 주목해서 이것의 제도화와 정책결정 개방도를 기준으로 각 정부의 국방문민화 수준을 분석했고, 정부별 핵심 국방/안보정책에서 이것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도 살펴보았다.

국방문민화가 제도적 틀을 갖추고 진전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기였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 NSC는 활성화되었고, 노무현 정부 시기에 확장되는 동시에 정책결정의 개방성도 증대되었다. 이들은 IMF 경제위기라는 상황, 군과 국방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때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의사를 상당 부분 관철시켰다. 그래서 청와대는 NSC 주도로 대북정책이나 군 지휘 및 통솔 방향의 변화, 국방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국방문민화가 약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와 국방효율화를 내세우며 NSC를 사실상 해체했고, 정책기획 및 결정에서 군의 영향력은 강화되었다. 정부의 국방개혁안은 군 내 갈등이 반영되며 좌초했고, 북한의 위협에도 잘 대응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의 실패를 교훈삼아 국가안보실을 도입하고 NSC를 재구축했다. 하지만 정책결정은 과거보다 폐쇄적으로 이루어졌다. 군 출신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군은 NSC 재구축에 반대하지 않았고,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사드 도입, 북 도발 대응과 같은 주요 이슈에서 군의 선호와 일치하는 방향, 군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다.

이 글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국방문민화 설명에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NSC 제도화와 정책결정 개방도가 중요하다. 한국에서 NSC는 문민우위 관철의 중요한 제도적 도구가 된다. NSC 제도화는 법령과 상임위 및 사무처의 작동여부, NSC 역할 범위 고찰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제도화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정책결정의 개방도인데, 이것은 부서 규모와 군 출신 인사들의 점유율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NSC가 제도화되어서 작동해도, 정책결정이 폐쇄적이어서 군이나 군을 대표하는 국방부의 목소리만 반영된다면 국방문민화는 약화된다. 둘째, 역사적 상황조건의 중요

성이다. 국방문민화는 사회와 분리되어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시기별로 어떤 사건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글을 통해 1997년 IMF 경제위기,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북한의 위협이 국방문민화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주요 행위자의 지향과 전략, 이들 간의 정치가 중요하다. 분석을 통해 우리는 선출된 대통령들의 국방/안보 지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에 대응하는 군과 국방부의 전략이 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국방문민화의 다양성을 만드는지 알게 되었다. 여야 정당과 시민단체들도 국방문민화의 형태와 성격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특정 역사적 국면에서 국방문민화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의 지향과 전략, 힘의 관계를 생각해야 국방문민화의 시기별 성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2021년 11월 2일 접수
2021년 12월 15일 수정 완료
2021년 12월 16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동아일보. “[새얼굴에 듣는다 ③] 임동원 외교수석내정자”, 1998.02.1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19980212/7321713/1>).
- 신동아. “국방부·NSC ‘파워게임’ 에 안보전선 비상등: 이견 노출, 정보보고
누락, 조정기능 표류”, 2003.07.28.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02658/1>).
- 신동아. “‘新權府’ NSC, 조정·통제 권한 막강한 ‘정보의 저수지’”, 2004.02.27.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03220>).
- 한국경제. “靑, 대통령 자문 ‘국방발전위원회’ 설치”, 2005.3.14.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05031476903>).
- 신동아. “‘이명박 시대’의 軍: ‘왕형(王兄)’ 등에 업은 하나회 귀환? ‘경영 혁신’
한국판 럽스펠드 등장?”, 2008.01.09.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07025>).
- 주간동아. “누가 외교·안보를 핸들링하나- 대선 후보 빅3 진영 정책과 이슈
선점 경쟁”, 2012.11.12. (<https://weekly.donga.com/3/search/11/94909>).
- 주간동아. “軍 탕평이나, 또 다른 패권이나- 박근혜 당선인 예비역 역량 통
합…자주국방에 걸맞은 군 인사 전환점”, 2013.01.07.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95212>).
- 주간동아. “소리만 요란한 국가안보실 되나: 조직 위상과 기능 여전히 모호…
‘문고리 권력’ 외교안보수석실 넘어설까”, 2013.01.28.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95295>).
- 시사저널. “진격의 ‘군출신’ 김장수·남재준”, 2013.08.07.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869>).
- 신동아. “대장 출신 ‘안보 4인방’ 막강 영향력 꿈틀-기무사령관 경질사건으로
본 군 인사 난맥상”, 2013.12.20.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12700/1>)

- 신동아. “한번 배신하면 그걸로 끝! 최측근과는 한 시간씩 통화도- 박근혜 대통령 용인술”, 2014.02.20.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12816>).
- 동아일보. “남북 총격전 월 1회 수준, 휴전선이 위협하다”, 2015.05.17.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50517/71304659/1>).
- 주간경향. “[표지이야기] ‘외교 없는 안보’의 일방통행 결정”, 2016.07.26.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cle=201607191059211&pt=nv>)
- 강태호. 2010. 「천안함을 묻는다: 의문과 쟁점」. 창비.
- 공보처. 1992. 「제6공화국실록 노태우 대통령 정부5년 2 외교·통일·국방」. 공보처.
- 공보처. 1997. 「문민정부 5년 개혁백서」. 공보처.
- 국가안보실. 2014.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 국가안보실.
- 국가안전보장회의. 2004.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평화변영과 국가안보」. 국가안전보장회의.
- 국무총리행정조정실. 1995. 「김영삼정부 2년6개월 무엇을 개혁하였는가」. 국무총리행정조정실.
- 국방대학원. 1995. 「한반도 위기관리 전략과 제도의 발전방향」. 국방대학원.
- 국방부. 각연도. 「국방백서」. 국방부.
- 국회국방위원회. 1998. “제192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1999.05.14.)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국회사무처. 1990. 「148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4호 (1990.03.08.)」.
- 권영근. 2013. 『한국군 국방개혁의 변화와 지속 : 818계획, 국방개혁 2020, 397계획을 중심으로』. 연경문화사.
- 김경필·이수진. 2020. “한국 군 사법제도 재생산의 정치학: 노무현, 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4): 89-106.

- 김기원·이상현. 2020.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영향요인 분석 및 평가 -노태우 정부 이후 주요 국방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29: 115-143.
- 김동한. 2011. “역대 정부의 군구조 개편 계획과 정책적 함의.” 「국가전략」 17(1): 67-93.
- 김종대. 2010.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한미동맹과 전시작전권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나무와 숲.
- 김현. 2007.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노무현 정부의 대미 갈등사례의 분석.” 「사회이론」 31: 37-72.
- 대통령비서실. 2004.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2003년 2월 25일~2004년 1월31일».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비서실. 2006.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2005년 2월 1일~2006년 1월31일».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국방개혁 2020 -선진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대한민국 정부. 2008.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부.
- 대한민국 정부. 2011.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대한민국 정부.
- 문연철. 2013. “근거이론을 적용한 예비역단체들의 국방정책 참여 특성.” 「행정논총」 51(2): 257-282.
- 박재하·정길호. 1988.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의 활성화(活性化) 방안연구(方案研究).” 「국방정책연구」 7: 174-202.
- 박형중·전성훈·박영호·김영호·윤은기·전재성. 2013. 「Trustpolitik: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통일연구원.
- 새누리당. 2012.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새누리당.
- 서보혁. 2015. “결정의 합리성 :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정책 재검토.” 「국제정치논총」 55(3): 235-270.
- 서주석. 2014. “남북 군사관계와 위기관리.” 한국국방연구원 편. 「2014 한국

- 의 안보와 국방」. 한국국방연구원. pp. 202-217.
- 윤종성. 2011. 「천안함 사건의 진실」. 한국과미국.
- 이양구. 2014.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정책결정과정과 지배적 권력증추의 역할.” 「군사」 93: 349-388.
- 이정철. 2012. “탈냉전기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정책연합의 불협화음과 전환기 리더십의 한계.” 「한국학」 35(2): 131-161.
- 이종석. 2014. 「칼날위의 평화」. 개마고원.
- 이채연. 2012. “한국의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8(4): 1-28.
- 임종권. 2019. “국방정책 결정과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전봉근. 2008.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조정체계의 특징과 의미.” 「정세와 정책」 2008(05): 8-10.
- 정육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109: 219-236.
- 정창권. 2009. “21세기에 부합된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군사논단」 57: 63-88.
-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998.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대화: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성공 그리고 나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2권 이명박정부의 태동」.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박근혜정부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실천과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조경환. 2019.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의 정책형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 조승연. 2010. "천안함 사태 위기 관리." 「군사발전연구」, 4(1): 155-18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8. 「'97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제 15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청와대. 2009. 「성숙한 세계국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청와대.
- 한국국방안보포럼. 2006.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전시작전통제권 논란에 대한 이해」. 플래닛 미디어.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2005.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 - NSC법 개정을 중심으로 - 자료집」.
- 한상희. 2014. "군사법원체제의 개혁." 「입법학연구」 11(2): 27-51.
- Bechtol, B. 2005.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Background and Implications." *Korea Observer* 36(4): 603-630.
- Born, H. 2006.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Relevance, Issues, and Research Agenda." pp. 151-165 In Cafario, G.(e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the Military*. New York: Springer.
- Bruneau, T. and R., Goetze. 2006. "Ministries of Defense and Democratic Control." pp. 71-100 In Bruneau, C. and S., Tollefson. (eds.). *Who Guards the Guardians and How: Democratic Civil-Military Relations*. Texas: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 Bruneau, C. and S., Tollefson. (eds.). 2006. *Who Guards the Guardians and How: Democratic Civil-Military Relations*. Texas: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 Croissant, A. 2004. "Riding the Tiger: Civilian Control and the Military in Democratizing Korea." *Armed Forces and Society* 30(3): 357-381.
- Croissant A and D Kuehn. 2009. "Patterns of Civilian Control of the

- Military in East Asia's New Democracie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9: 187-217.
- Croissant, A., Kuehn, D., Lorenz, P. and P., Chambers. 2013. *Democratization and Civilian Control in Asi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Finer, S. 1975. *The Man on Horseback: The Role of the Military in Politics*. Middlesex: Penguin Books.
- Giraldo, J. 2006. "Legislatures and National Defense: Global Comparison." pp.34-70 In Bruneau, C. and S., Tollefson. (eds.). *Who Guards the Guardians and How: Democratic Civil-Military Relations*. Texas: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 Jun, J. 2001. "South Korea: Consolidating Democratic Civilian Control." pp. 121-142 In Alagappa, M. (ed.). *Coercion and Governance: The Declining Political Role of the Military in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Kim, K-P. 2021. "The Democratic Deficit in South Korea: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Since 1993."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4. <https://doi.org/10.1017/S1468109921000323>.
- Kim, Y.C., R.W. Liddle, and S., Said. 2006. "Political Leadership and Civilian Supremacy in Third Wave Democracies: Comparing South Korea and Indonesia." *Pacific Affairs* 79(2): 247-268.
- Kuehn, D. 2017. "Reforming Defense and Military Policy-Making in South Korea, 1987-2012." pp. 151-169 In Croissant A and D Kuehn. (eds.). *Reforming Civil-Military Relations in New Democracies*. Cham, Switzerland: Springer.
- Moon, C. and Rhyu, S. 2011. "Democratic Transition, Persistent Civilian Control over the Military, and the South Korea Anomaly."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3): 250-269.

- Pion-Berlin, D. 2011. "The study of Civil-Military Relations in New Democracies."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3): 222-230.
- Rukavishnikov, V. and M., Pugh. 2006. "Civil-Military Relations." pp. 131-149 In Cafario, G. (e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the Military*. New York: Springer.
- Young, T-D. 2006. "Military Professionalism in a Democracy." pp. 17-34 In Bruneau, C. and S., Tollefson. (eds.). *Who Guards the Guardians and How: Democratic Civil-Military Relations*. Texas: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The Civilian Control over the Military in Security and Defense Policymaking after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Kim, Kyung-Pil
Korea University

Nam, Yunchchol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explains the civilian control over the military in security and defense policymaking from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e first civilian government after democratization, to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 important body in South Korea's civilian control is the NSC, which can be in charge of planning, implementing, and coordinating security and defense policies. In this paper, the level of civilian control is explained based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NSC and the degree of openness in policy decision-making. The activation and expansion of the NSC took place during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Despite the economic crisis and opposition from the militar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opposition party, they strengthened civilian control through political compromises and amendments to the Presidential Decree. Therefore, the Blue House was able to promote a change in policy toward North Korea, a change in the direction of military command and leadership, defense reform, and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led by the NSC. During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civilian control was weakene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ursued a small government and disbanded the NSC. While the military's influence in policy planning and decision-making was strengthened, policy coordination was not been well achieve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ntroduced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and re-established the NSC, but the policy-making process was more closed than in the past. Former military generals occupied important positions in

policymaking, and major security and defense policies were implemented in a way that was consistent with military preferences or promoted military autonomy.

Key words: civil-military relations, civilian supremacy,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South Korea, NSC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주변인으로서의 인식 탐색

양재영* · 임승엽**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이 경험한 학교폭력 주변인으로서의 인식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감소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준거적 선택법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주변인으로서 경험이 있는 중학생 12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반구조적·개방형 면담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동조자, 강화자, 방어자, 방관자로 범주화되었다. 둘째, 주변인으로서 학교폭력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으로 언어적/행동적 개입을 강조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정기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담임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개선 및 증대를 학교폭력 예방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스마트 세대에 맞는 스마트폰 앱 신고 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 또한 학교폭력 예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각기 다른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러한 경험으로 통해 실효적 수준의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자세와 역할 그리고 기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중학생, 학교폭력, 폭력 주변인, 폭력근절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초빙교수, bestyang95@naver.com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부교수, slim3@korea.ac.kr

I. 서론

최근 운동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격 박탈과 해외 도피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영역을 불문하고 지속되어 온 골칫거리다. 교육부의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폭력이 전체 726건 중 229건(31.5%)으로 가장 많고, 언어폭력 151건(20.8%), 사이버 폭력 113건(15.6%), 금품갈취 80건(11.0%), 성폭력 77건(10.6), 강요 45건(6.2%)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또한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주로 대도시 지역에서 높게 발생하고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중학생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교육부, 2021; 전승현, 2021).

중학생 시기는 신체적 발달이 왕성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또래문화에 쉽게 동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탈행위 노출 위험이 초등학생,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용한, 2008). 또한 중학생들의 학교폭력은 일회성 또는 우발적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습관적 폭력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산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목을 압박하고 성추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태 진상규명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정처벌을 요청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이 사건의 가해자도 중학생으로 드러났다(경향신문, 2021. 5. 26).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불행한 학창생활에 신체적,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인 적대감, 복수, 절망감, 불안, 우울, 공포, 자존감 상실 등의 심리·정서적 증상을 겪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송은주, 2015; 이지연, 조아미, 2012). 나아가 일부 피해 학생들은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인해 성적이 저하되고 불면증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무기력한 학교생활을 보내거나 심지어 대안학교 등으로 전학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가족 혹은 교사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상황도 발생해 왔다(박상식, 2021). 이러한 문제는 피해 학생 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가족기능의

유지, 안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 그리고 건강한 미래 사회환경 구축 등의 측면에서 거시적 사회 문제로 봐야 한다(Pozzoli & Gini, 2021).

학교폭력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상황에서 주변인의 중재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고 있으며, 주변인의 개입이 학교폭력 감소와 예방을 위한 조정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손경원, 신원영, 정창우, 2016). 특히 학교폭력 예방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핀란드에서도 최근 학교폭력의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식보다 제3자인 목격자 또는 주변인의 행동에 무게를 두고 그들의 적절한 개입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최지훈, 남영옥, 2017). 국내에서도 학교폭력이 집단 내 역동적인 상황과 흐름의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변인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해행위의 저지와 예방적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이필주, 2018; 이지연, 조아미, 2012). 즉, 학교폭력 상황에서 주변인들이 보이는 태도나 행동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과 고통이 가중 또는 감소할 수 있고 가해학생의 폭력적인 행동도 강화 또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실제 학교폭력 상황에서 주변인의 개입 방식에 따라 학교폭력은 다양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를 이해하고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은 가해자의 폭력행동을 줄이거나 중단시킬 수 있고, 이러한 방어적 반응은 향후 가해자의 가해 행동 또는 폭력적 행동이나 상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정도를 낮출 수 있다(남궁미, 장재홍, 2019).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주변 반응과 태도가 방관적일수록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나며 폭력의 강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정혜원, 2017). 이에 일선 현장의 관점에서 볼 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적 구도의 해결방법을 넘어 제3자 즉 주변인의 역할과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최윤영, 하정희, 2016).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학생들이 경험한 학교폭력 주변인로서의 인식과 견해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효과적 대응 그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학교폭력 상황에서 중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목격하며 다양한 태도와 반응을 취하는 방식의 이유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실효적 수준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주변인의 바람직한 자세와 역할 그리고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학교폭력과 주변인

학교폭력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점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후, 다수의 학생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며 주변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변인 역할유형 분류에 대한 연구는 Salmivalli et al.(1996)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Salmivalli et al.(1996)은 학교폭력 상황에서 가해자(bully), 동조자(assistant), 강화자(reinforcer), 방어자(defender), 방관자(outsider), 피해자(victim) 등 여섯 가지의 주변인 역할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변인은 참여자 중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강화자, 동조자, 방어자, 방관자의 네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안효영, 진영은, 2014).

〈그림 1〉 참여자의 역할유형(이규미 외, 2014, p. 73)



전연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 주변인은 동조자, 강화자, 방어자, 방관자 등 네 부류로 구분되는데, 먼저 동조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동에 동조하며 가해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나 역할을 하는 자이며, 강화자는 가해자의 괴롭힘에 직접적인 행동으로 가담하는 것보다 언어적 표현으로 부추기거나 그 정도를 심화시키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자이다. 방어자는 가해자의 괴롭힘이나 폭력행위를 저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하며, 방관자는 가해자의 폭력행동이나 괴롭힘을 목격하였지만 아무런 행동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를 뜻한다(Salmivalli, 1999; 손강숙, 이규미, 2015).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은 주변인으로서의 역할 유형을 예측하는 데 영향을 준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almivalli(2001)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또 다른 학교폭력 현장에서 주변인으로서 동조자가 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Oh & Hazler(2009)의 연구에서는 가해경험에 더해 피해경험을 한 학생 또한 괴롭힘 경험이 없는 주변인보다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경험이 많은 주변인일수록 학교폭력 상황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해경험이 없을수록 긍정적 주변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주변인과 피해경험이 없는 주변인에 대한 비교 결과, 피해경험 주변인의 경우 괴롭힘 목격 경험으로 인해 사회 부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Werth, 2015), 이는 학교폭력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주변인 또한 이를 통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사실과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단순 주변인과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박예라, 오인수, 2018).

현재까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학교폭력 관련 선행연구는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권오명, 2005; 이종길, 2008; Suh, 2019; Morgan-Lopez, Saavedra, Yaros, Trudeau, & Buben, 2020)와 대처 방법을 고안하는 연구(김창균, 임계령, 2010; 오종은, 김세영, 2017; 장윤옥,

2013; Banyard et al., 2019; Pusch, 2019)가 대부분이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해자 또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식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안하며 다양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그리고 교사와 부모, 학교 차원에서의 행정적인 개입을 강조해 왔다(신성자, 2014; 유영현, 2012; 이은하, 2018; Garcés-Prettel, Santoya-Montes, & Jiménez-Osorio, 2020).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기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감정적 갈등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제3자 즉 주변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중학생 시기에는 초등학교생이나 고등학생과는 달리 동료나 또래 집단에 의해 가치관과 공감 능력이 빠르게 형성되고 아울러 동료의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이 학교생활의 심리적 안정과 자기조절 그리고 갈등 해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있어 주변인들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박병금, 노필순, 2016; Fisher, Turanovic, & Benitez, 2020).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Goetz & LeCompte(1984)가 제시한 준거적 선택법(criterion-based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3명의 학교폭력 관련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준거를 설정하였다: 1) 중학교 재학생, 2) 학교폭력 목격 경험자, 3) 연구 참여 의사. 이외에도 남녀 성비와 학년별 균등한 비율을 확보하여 성비와 학년에 따라 편중되지 않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참여자	학년	성별	역할
유○○	1	남	방관자
노○○	1	남	방관자
정○○	1	여	방어자
김○○	1	여	방관자
서○○	1	여	방관자
성○○	2	여	방어자
정○○	2	남	강화자
황○○	2	여	방관자
김○○	3	남	동조자
전○○	3	남	방관자
주○○	3	남	방어자
오○○	3	여	방어자

준거항목이 결정된 뒤, 본 연구자의 지인인 한 중학교 교사에게 연구 참여자 선정을 의뢰한 뒤 S시에 위치한 남녀공학 중학교¹⁾에 재학 중인 남학생 6명과 여학생 6명을 포함한 총 12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5명, 2학년 3명, 3학년 4명으로 구성되었다.

2. 측정도구 및 자료수집

연구 참여자의 내부적 경험구조를 탐색하고 연구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획득 및 면담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1차 면담문항을 개발하였다. 이후 한 차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는 3명의 중학생이 비구조적 면담에 참가하여 자신의 학교폭력 목

1) 다른 중학교와 큰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중학교

격 주변인으로서의 경험에 대해 연구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예비조사를 통해 2차 면담문항을 개발한 뒤 학교폭력 관계자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 타당성을 검증한 후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면담문항을 완성하였다.

- 첫째, 학교폭력을 목격한 경우가 있었다면 어떠한 자세나 태도를 보였습니까?
- 둘째,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목격자의 역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 셋째,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이 어떠한 이유로 방해나 저지를 못 한다고 생각하나요?
- 넷째,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지 한다고 생각하나요?
- 다섯째,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근절시키고 예방하는 데 있어 어떠한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자료수집을 위해 소개받은 12명의 중학생들과 그들의 보호자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면담은 개방형 반구조적 면담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학교수업이 종료된 후 조용한 공간에서 약 60분간 개인면담이 이루어졌다. 모든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내용은 전사하여 문서화하였다. 이후 면담 내용의 확인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문서를 발송하여 확인하게 한 뒤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였다.

3. 자료 분석 및 자료의 진실성

수집된 자료는 Strauss & Corbin (1990)가 제시한 반복적 비교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을 통해 녹음된 모든 자료는 전사 처리하였다. 둘째, 전사된 자료는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단어와 어구를 확인하는 개방코딩(Open coding)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코딩된 자료는 유사한 의미 혹은 내용을 바탕으로 범주화하였다. 셋째, 도출된 범주들은 범주들의 내용과 영역의 특성 및 패턴에 따라 대주제로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생성된 대주제에 대한 동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한편, 자료의 진실성 확보는 질적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3인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반복적인 동료 검토(peer review)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석대상을 유사한 맥락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대주제로 도출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동료 간 검토를 진행하여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연구결과의 진실성이 확보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폭력 상황을 1회 이상 목격 및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상황에서 동조자, 강화자, 방어자, 방관자 유형으로 자신의 경험을 묘사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개인적 관점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대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의견과 방안을 제공하였다.

1. 나는 어떤 역할이었나?: 주변인 유형에 따른 경험과 의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목격했거나 경험했던 학교폭력상황

에서 자신들이 취했던 역할과 생각을 진술하였다. 그리고 각자의 경험은 학교폭력 주변인의 네 가지 유형인 동조자, 강화자, 방어자, 방관자 중 하나의 역할로 범주화되었다.

(동조자) 폭력 상황을 봤을 때 가해하는 애들한테 계속 괴롭히라고 말했어요. 사실 가해학생들이 괴롭히는 것처럼 저도 같이 괴롭혔었습니다. 같이 웃고, 욕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했는데 지금은 후회해요. 만일 제가 맞는 입장이라면 어휴. 큰 싸움으로 번졌을 거예요. (김○○, 남, 중3)

(강화자) 폭력을 본 상황에서 맞는 애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옆에서 때리는 애들을 부추겼던 것 같아요. 더 괴롭히라고 말로 부추겼어요. 맞는 애가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저는 그 상황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 못했고 맞는 애도 크게 저항을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마도 저항을 했으면 그렇게 계속 맞고만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정○○, 남, 중2)

(방어자) 한 학생이 농담으로 같은 반 학생에게 조금 심한 말을 하고 계속 그 학생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한테 가서 이제 그만 하라고 말했고 피해 학생한테도 니가 참으라고 얘기했었어요. 또 놀린 애한테 가서 자꾸 그러면 선생님에게 말한다고 했어요. 피해 학생은 학급에서 다른 애들에게 가끔씩 놀림을 당하는 애거든요. 제 생각에 피해 학생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그냥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성○○, 여, 중2)

(방관자) 애들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고 때리는데 저는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때리는 애가 싸움을 잘하거든요. 괜히 끼었다가 그 학생이 저를 때릴까 봐서요. 제 입장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맞고 있는 친구가 그냥 안 돼 보였어요. 조금 비겁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도 힘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지만 뭐 어찌겠어요. (전○○, 남, 중3)

제시된 면담내용에 추가하여 전체 연구 참여자 각각의 주변인으로서의 경험을 범주화하면 총 12명의 학생 중 방관자의 역할이 6명(5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방어자 4명(34%), 동조자 1명 (8%) 그리고 강화자 1명(8%) 순으로 확인되었다. 방관자 학생들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학교폭력 상황에 개입하면 발생할 피해와 보복 등으로 인해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학교폭력 피해를 방어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심적 불편함을 고백하였다. 따라서 방관자 학생들에게 심리적 변화에 따른 방어적 행동 유발을 위한 자극 또는 교육이 주어진다면 방어자로서의 역할 전환이 가능하다.

방어자 행동을 취한 학생들은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이해가 발휘된 사례이다. 선행연구들은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어자의 도움 행동이나 저지가 피해자의 상황을 전환시키고 가해자의 폭력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심미경, 서미정, 2013; 이필주, 2018). 또한 이러한 방어자의 역할은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자적 역할을 취하는 학생들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지와 개입 행동 촉발을 위한 자극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최기원, 2012). 즉 학교폭력에 대한 제3자의 방어적 행동은 주변인들의 정서적 유대감을 이끌어 피해자를 돕는 방어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인식을 높여 학교폭력 감소와 예방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조자 행동을 보인 학생들은 학교폭력 상황에서 가해 성향이 높고 보편적으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며 피해자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공감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의미한다(Siller, Edwards, & Banyard, 2021).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춘기에 속하는 중학생들은 또래집단의 폭력행동이나 가치관에 쉽게 동조하고 모방하는 양상을 보이며 욕구충족에 대한 좌절이나 불만 및 스트레스 등을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박현숙, 홍현희, 한윤선, 2018). 따라서 학교폭력상황에서 동조 행동을 보인 학생들이 바람직한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그리고 교우와의 갈

등 관계에서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강화자 유형의 행동을 보인 학생의 경우에도 피해 학생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이 때문에 가해 학생의 행동에 동조행위를 보인 경우이다(Siller et al., 2021).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학생들 또한 학교생활 적응이 원활하지 않고 교우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송정아, 김영희, 2001; 엄명용, 송민경, 2011). 그러므로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인성교육 또는 올바른 교우관계 형성과 사회성 발달 및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교폭력 친화적인 언행 및 사고방식을 줄이고 올바른 학교생활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 예방 수단이 될 수 있다.

2. 학교폭력 목격자의 바람직한 대응이란?: 중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주변인의 행동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학교폭력 상황에서 폭력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주변인으로서 능동적인 대응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에 중론을 모았다. 학교폭력에 대한 동조자, 강화자의 태도는 물론이고 방관자로 역할 할 때 폭력행위는 중단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가해행위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폭력 주변인으로서의 언어적 또는 행동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사실 지금까지 구경만 한 입장이었는데요, 학교폭력 상황에서 학생들이 저처럼 방관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거나 중재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 남, 중1, 방관자)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주변 학생들이 말로만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면 가해 학생이 움찔해요. 개네들 폭력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은 자

기 일 아니니까 그냥 놔두고 모르는 척하죠. 저도 그랬어요. 가해 학생에게 “선생님에게 말 할 거야” 라고 말만 해도 대부분 끝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자신에게 보복이나 피해가 올까 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죠. 거의가 그래요. (김○○, 여, 중1, 방관자)

가해 학생에게 그만하라고 말하거나 말리거나 하면 학교폭력 상황에서 피해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분명히 피해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시간이나 피해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피해 학생과의 관계 또는 가해 학생과의 관계 때문에 학생들이 취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 남, 중3, 방어자)

학교폭력은 대부분 같은 성끼리 생기고 몇몇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애들은 주로 말로 괴롭히고요, 남자애들은 때리죠. 물론 남자애와 여자가 한 여자애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폭력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나서서 피해 학생을 도와줘야 합니다.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건 당연하지만 친구들의 도움이 절실해요. (오○○, 여, 중3, 방어자)

연구결과에서 일부 학생들이 동조자와 강화자의 역할을 했지만 다수 학생들은 학교폭력 상황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줄이고 학급 동료로서 바람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서 방어자로서의 역할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손경원 등(2016)의 연구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네 가지 주변인의 역할에 따른 개인의 실제 인성(본성)적 특성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또한 가해학생이나 동조학생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돕지 않았다고 해서 방관자 입장의 학생이 인성적으로 동조학생에 비해 우월하지 않다는 점도 밝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에 대한 주기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뿐 아니라 인성교육을 통한 방어자 역할의 내면화 강화를 통해 하나의 학교폭력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학교폭력 주변인의 제안 #1: 철저한 예방교육

연구참여 학생들은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가해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부족, 즉 폭력행위에 대한 판단력 부족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학기에 한 차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생략되거나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오임택, 2021).

학교폭력을 하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고칠 수 있게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개네들 생각이 바뀌어 학교폭력이 많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 여, 중2)

요즘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건 사실이예요. 괴롭히는 애들이 크게 혼이 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계속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주○○, 남, 중3)

학교폭력을 봤을 때 바로 신고도 하고 도움도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학생들이 신고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신고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해요. 그래야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신고를 잘하죠. (전○○, 남, 중3)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학생들에게 그 가치가 내면화되고 생활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방교육의 시간과 시기 등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등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인식 및 공동체 생활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오임택, 2021).

4. 학교폭력 주변인의 제안 #2: 처벌강화/무관용주의의 실천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폭력 가해 학생들이 폭력에 대한 처벌이 약하거나 발각된다 해도 경고 수준에 머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가해행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가해자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때리는 애들은 선생님들이 잘 혼내지도 않고 처벌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몇 마디 하고 끝나니까 잘못을 인식 못 하는 것 같아요. 개네들은 폭력에 대해 계속 그냥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성○○, 여, 중2)

애들을 괴롭히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개네들 한테는 정말 강한 벌이 필요해요. 전학을 보내든지요. 안 그러면 계속 그러거든요. (노○○, 남, 중1)

학교폭력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개네들 한테 처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애들이 다시는 그런걸 못하게 혼내주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신고도 할거예요. (정○○, 남, 중2)

면담 참여자들은 학교폭력 예방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예외 없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의견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집행함으로써 학교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매우 엄격한 기준과 적용을 통해 가해행위의 부정적 결말을 인식시켜 근신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김상곤 외, 2013). 국내에서도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처벌에만 의존하면 안되겠지만 사회·정서적 불안정한 시기의 중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학교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제도가 올바르게 작동되어야 한다.

5. 학교폭력 주변인의 제안 #3: 담임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확대

면담 참여자들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학생과의 원만한 관계는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영향력을 갖는다. 즉, 교사와 학생 간 형성된 우호적 관계는 학업 성적, 정서 형성, 그리고 사회성 함양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은형, 2010).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관계가 원활할수록 학교폭력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아울러 예방적 차원에서도 긍정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다.

때리는 애들 문제는 우리들[학생들이] 해결하기엔 힘들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걸 알고 처리해주면 우리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선생님들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특을 하면서 학교폭력 문제를 바로 바로 알려드리면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황○○, 여, 중2)

여학생들한테는 학교폭력 상황에 바로 나서서 행동하는건 한계가 있어요.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그러한 상황을 알리고 앞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얘기해 주는 게 우리[여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김○○, 여, 중1)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게 하면 앞으로 우리들이 학교폭력 상황을 말리더라도 잘 통할 것 같아요. 때리는 애들이 좀 운순해진다고 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 선생님들이 있는걸 개네들이 아니까요. (성○○, 여, 중2)

학교폭력 주변인으로서 직접적으로 중재적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경우 학교폭력의 감소와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담임교사와의 원만한 관계 및 소통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순석(2020)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폭력의 감소와 예방이 가능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폭력 문제의 감소와 해결에서 교사의 수평적 의사소통, 친밀감, 신뢰관계 및 보호 등과 같은 사회적 역할의 유의적 효과성을 입증한 다른 선행연구(이미형 외, 2009; 임재연, 2017)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한 유대감이 학생들의 바람직한 학업 생활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사회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며 교사와 학생 간의 우호적이고 원만한 소통 관계가 학교폭력의 위험 신호 또는 실제 상황에서 학생들의 대응을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감소와 예방을 위한 교사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성 증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6. 학교폭력 주변인의 제안 #4: ‘스마트’한 신고 시스템 구축과 홍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편리한 신고시스템 즉 전화신고가 아닌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대부분이 스마트폰 세대인 중학생들의 관점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 시스템은 그들에게 가장 접근성 좋고 편리한 신고 도구로서 학교폭력 신고의 유용한 창구역할이 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맞았다 하면 피해 사실을 비밀리에 신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도 불편해요. 그런 게 잘 활용되면 학교폭력이 낮아지거나 충분히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서○○, 여, 중1)

요즘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어플에 신고할 수

있으면 더 빠르게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가해하는 애들도 쉽게 애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 같고요. (정○○, 여, 중1)

학생들이 스마트기기 다루는 것에 익숙하고 또 편해서 문자나 앱 같은 데에 신고가 잘 이루어지면 누가 신고를 했는지 알기 어렵고 학교폭력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전○○, 남, 중3)

2021년 현재 스마트폰에서 “학교폭력 신고”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한 결과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 국민제보’(경찰청), ‘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권익위원회)가 검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학교폭력 전용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폭력과 범죄 신고용 어플리케이션이었으며, 중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춰 제작된 것이 아니었다. 이외에 개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제공하는 학교폭력 관련 어플리케이션인 ‘학교폭력 EXIT,’ ‘학교폭력 매뉴얼,’ ‘학교폭력피해자의 투쟁’ 등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신고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상황은 교사, 감독자의 부재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속한 신고와 증거자료 확보는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를 효과적으로 저지 및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yars, Graybill, Wellons, & Harper, 202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중학생들의 주변인적 인식과 태도를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탐색하였다. 청소년기 중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주로 학급 내 또래관계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자적 태도를 줄이고 피해자를 돕는 제3자의

역할이 학교폭력의 감소와 예방에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는 것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특히 가해 학생에 동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조자와 강화자 그리고 상황에 무관심한 방관자의 경우에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철저한 시행을 통해 방어자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동기를 사전에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처벌 강화, 스마트폰 플랫폼과 웹기반 통신수단을 통한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교사의 역할적 측면에서 학생들과 친근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호의적인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교사의 이러한 노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신고행위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보호의 수단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궁극적으로 중학생들의 학업과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주변인적 인식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중학생들의 관점을 탐색한 만큼, 제시된 방안의 일반화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를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정책방안으로 이해하기에도 제한적임을 밝혀둔다. 이에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연구과제를 후속연구에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는 면담을 활용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주변인적 태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심리적 도구를 활용한 혼합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에 대한 내적 및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주변인적 태도 유형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심리적 특성에 대한 조사도 주변인적 태도와 의 인과관계 또는 특정한 중속변인과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 내 여러 방과 후 프로그램(예, 방과 후 스포츠 클럽 등)의 참여가 주변인적 태도 형성과 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후속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혹은 고등학생의 관점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안을 도출한다면 초·중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주변인적 태도의 형

성과 사회·심리적 상황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21년 10월 31일 접수
2021년 12월 16일 수정 완료
2021년 12월 17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21.5.26. “제설제 먹이고 집단폭행까지. 충북 제천시 동급생 괴롭힌 중학생 6명 강제 전학”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105261633001>.
- 교육부. 2021.01.04.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list.do?type=default&page=2&max=020402&s=moe&boardID=294>.
- 권오명. 2005.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18, 257-279.
- 김상곤·배진형·한정숙·김희영. 2013. “영국, 미국, 노르웨이, 독일의 학교폭력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 분석연구.” 『학교사회복지』 25, 333-364.
- 김순석. 2020. “교사와 학생관계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22(4), 55-80.
- 김은형. 2010. 「중학생에 의해 지각된 가족체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교우관계 및 교사-학생관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균·임계령. 2010.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38, 173-198.
- 김현주. 2003. 「집단따돌림에서의 동조집단 유형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궁미·장재홍. 2019. “청소년의 불안, 회피애착과 학교폭력 방관·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이타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6(1), 87-104.
- 박병금·노필순. 2016.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정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10), 181-203.

- 박상식. 202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제언.” 「법학연구」 29(2), 1-26.
- 박예라·오인수. 2018. “초등학생의 괴롭힘 경험과 주변인행동의 관계: 또래 동조성과 학급규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9(1), 1-27.
- 박현숙·홍현희·한운선. 2018.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이 학교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일반긴장이론을 기반으로 한 구조모형.” 「조사연구」 19(2), 1-23.
- 손강숙·이규미. 2015. “학교폭력의 방어자 역할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3), 317-348.
- 손경원·신원영·정창우. 2016.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에 따른 인성 특성과 또래 괴롭힘 친화성의 영향 변인 연구.” 「초등도덕교육」 51, 117-161.
- 송은주. 2015. “집단따돌림경험과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 발표논문집」, 283-322.
- 송정아·김영희. 2001.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행동적 학교적응 강화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3(1), 79-94.
- 신성자. 2014. “교사의 학교폭력개입능력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대응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폭력인식과 학교폭력정의의 이차 매개효과분석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8, 137-165.
- 심미경·서미정. 2013. “또래괴롭힘에 대한 방관 및 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급 변인: 학급규범과 교사감독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1(2), 225-246.
- 안효영·진영은. 2014. “또래괴롭힘 상황에서의 주변인의 역할 연구동향 및 과제.” 「열린교육연구」 22(4), 95-117.
- 엄명용·송민경. 2011. “학교 내 청소년들의 권력관계 유형과 학교폭력 참여 역할 유형.” 「한국사회복지학」 63(1), 241-266.
- 오임택. 2021.01.06. “학교폭력 예방교육 문제점과 개선방안”
<https://blog.naver.com/kijangcounty/222239699237>.

- 오종은·김세영. 2017. “초기 청소년의 정서지능, 공격성,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태도 간의 관계.” 「학교사회복지」 40, 195-215.
- 유영현. 2012. “학교폭력 대응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 205-231.
- 이규미·지승희·오인수·송미경·장재홍·정제영·조용선·이정운·유형근·이은경·고경희·오혜영·이유미·김승혜·최희영(2014).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이미형·임지영·이순득·오승은. 2009. “학교폭력에 관한 교사의 인식.”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3(2), 174-185.
- 이은하. 2018.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회복지경영연구」 5(2), 447-461.
- 이종길. 2008.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 및 대처 방안 연구.” 「윤리연구」 69, 305-334.
- 이지연·조아미. 2012.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의 방관적 태도가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4(4), 337-357.
- 이필주. 2018. “학교폭력 방관자 연구 동향 분석.” 「인성교육연구」 3(2), 41-58.
- 임재연. 2017. “학생이 경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사역량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4(2), 181-208.
- 장윤옥. 2013.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 「중등교육연구」 61(1), 231-260.
- 전승현. 2021.08.09. “늘어나는 학교폭력... 절반 이상이 중학생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9056500054?input=1195m>.
- 정혜원. 2017. “학교폭력 방관자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30(2), 155-176.
- 조용한. 2008. “한국 청소년 폭력집단의 실태와 대책.” 「비교형사법연구」 10(2), 677-699.
- 최기원. 2012. 「남녀 중학생의 도덕적 정서와 또래괴롭힘 방어 및 방관행동

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영·하정희. 2016. “남녀 중학생의 또래괴롭힘 가해, 피해 가능성에 영향 미치는 심리적 특성들의 구조모형 검증.” 「청소년학연구」 23(12), 129-157.
- 최지훈·남영옥. 2017. “학교폭력과 주변인 역할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6(2), 275-297.
- Banyard, V. L., Edwards, K. M., Rizzo, A. J., Theodores, M., Tardiff, R., Lee, K., & Greenberg, P. 2019. Evaluating a Gender Transformative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Boys: A Pilot Stud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01: 165-173.
- Byars, J., Graybill, E., Wellons, Q., & Harper, L. 2020. Monitoring Social Media and Technology Use to Prevent Youth Suicide and School Violence. *Contemporary School Psychology* 24(3): 318-326.
- Fisher, B. W., Turanovic, J. J., & Benitez, I. 2020. School-related Outcomes Associated with Seeing Someone Shot: Do Friends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School Violence* 20(1): 31-44.
- Garcés-Prettel, M., Santoya-Montes, Y., & Jiménez-Osorio, J. 2020. Influence of Family and Pedagogical Communication on School Violence. *Comunicar* 28(63): 77-86.
- Goetz, J. P. & LeCompte, M. D. 1984.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Orlando: Academic Press.
- Morgan-Lopez, A. A., Saavedra, L. M., Yaros, A. C., Trudeau, J. V., & Buben, A. 2020. The Effects of Practitioner-delivered School-based Mental Health on Aggression and Violence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ers. *School Mental Health* 12: 417-427.
- Oh, I. & Hazler, R. (2009). Contributions of personal and situational factors to bystander reactions to school bullying.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0: 291-310.

- Pozzoli, T. & Gini, G. 2021.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Students' Social Status and Their Roles in Bullying: The Mediating Role of Self-Perceived Social Status. *Journal of School Violence* 20(1): 76-88.
- Pusch, N. 2019. Protective Factors for Violent Victimization in Schools: A Gendered Analysis. *Journal of School Violence* 18(4): 597-612.
- Salmivalli, C. 2001. Feeling good about oneself, being bad to others? Remarks on self-esteem, hostility, and aggressive behavior.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5(2): 112-120.
- Salmivalli, C. 1999. Participant Role Approach to School Bullying: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Journal of Adolescence* 22(4): 453-459.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 1-15.
- Siller, L., Edwards, K. M., & Banyard, V. 2021. School and Community Correlates of Interpersonal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Psychology of Violence* 11(3): 244-252.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Sage Publications.
- Suh, E. S. 2019. The Effects of Therapeutic Group Drumming with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on Aggression as Related to School Violence Prevention. *The Arts in Psychotherapy* 66: 1-10.
- Werth, J. M., Nickerson, A. B., Aloe, A. M. & Swearer, S. M., 2015. Bullying victimization and social and emotional maladjustment of bystanders: A propensity score analysi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3: 295-308.

Recognition and views as bystanders through experiences of school violenc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Yang, Jaeyoung

Department of Sport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Lim, Seungyup

School of Global Sport Studies,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erceptions and views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experienced school violence as bystanders,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reduction and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Participants included a total of 12 students (6 male and 6 female students) in grades 1-3, enrolled in a middle school located in S City. All students participated in semi-structured and open-ended interviews individually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As results, the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study recognized that the role of intervention as a bystander in order to reduce and prevent school violence was very important, and expressed their views on more effective actions and countermeasures. It included six major themes: 1) experience according to the types of bystander, 2) desirable response as a bystander, 3) strengthening education to prevent school violence, 4) strengthening the level of punishment for students who are conducting school violence, 5)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a teacher and students, 6) establishment of a convenient school violence reporting system. It was confirmed that the defender role helping a victim, not as a bystander who does not provide any assistance or interven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reduction and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Particularly, sympathizers and reinforcers who play a sympathetic role for the perpetrator students and bystanders who show no response to the victim can show defensive attitudes and behaviors against school violence

if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is effectively implemented in schools.

Key words: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violence, bystander of violence, eradication of violence

『한국사회』 투고 및 발행규정

- 제 1 조 (발간)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학술지인 <한국사회>라는 학술지를 발간한다.
- 제 2 조 (목적) <한국사회>는 한국사회가 지니는 다양한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학제간의 유기적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사회과학 기초이론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발간회수 및 일자) <한국사회>는 연 2회, 6월 30일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 제 4 조 (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 5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장은 한국사회연구소 운영위원 중 1인이 겸임하며, 10여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제 6 조 (편집위원회의 위촉) 편집위원은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업적에 있어서 탁월하며,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의 제반학술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공로가 많은 사람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 7 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술지의 편집방향의 결정 및 발행과 관련한 예산의 집회
 2. 논문심사의 방법 및 논문심사위원의 결정, 최종 게재여부의 결정
 3. 특집호의 발행 및 내용의 결정
 4. 본 학술지의 대내외적 홍보
- 제 8 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9 조 (논문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논문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접수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전 원고모

집 및 발행과 관련된 공고를 한다.

2. 본 학술지에 투고할 원고는 다른 기관이 학회에 제출된 논문일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유관분야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한다. 심사의 위촉은 연중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4. 신청된 논문은 3인 이상의 전문영역 학자들에 의하여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위원은 게재 가(O), 재심(△), 게재 부적합(X) 등으로 논문을 평가한다.
5. 심사위원의 세부 심사기준은 ① 연구목적의 명료성, ② 분석의 엄밀성, ③ 이론적용의 타당성,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⑤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⑥ 관련문헌의 취급, ⑦ 연구결과의 의의, ⑧ 문장의 가독성, ⑨ 논문의 독창성, ⑩ 논문제목의 적합성, ⑪ 연구주제의 중요성, ⑫ 이론적 기여도, ⑬ 방법론적 기여도, ⑭ 연구결과의 실용성 등으로 나뉘어진다.
6. 투고 원고에 대한 최종판정은 아래의 심사판정기준을 따라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초심결과	판정	게재 및 재심 과정
○ ○ ○		게재확정
○ ○ △	게재가능	수정권고후 게재
○ ○ X		수정을 전제로 게재
○ △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1인 이상이 게재 가이면 게재가능
○ △ X	재심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 가이면 게재가능
△ △ X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모두가 게재 가이면 게재
X X X		
X X △	게재불가	
X X ○		

7. 재심 판정된 논문의 투고자가 재심에 응하지 않기로 알려진 경우 또는 재심용 원고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한(재심판정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투고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8.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최종원고 제출 등은 모두 전자메일을 이용한다.

제 10 조 (이의신청)

1. 논문 투고자가 게재불가 판정 결과에 불응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2.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심사논문의 원문, 심사 의견, 이의 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다시 한번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지면 저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제 11 조 (투고 규정) <한국사회>에 게재될 논문은 ‘<한국사회> 원고 작성 및 제출요강’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제 12 조 (계재) 원고분량은 원고지 150매 내외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 13 조 (저작권 활용동의 절차 및 권한명세)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고 연구윤리준수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게재확정이 된 논문의 경우, 최종 수정본을 제출할 때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사회연구소에 속한다.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

국사회연구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서 논문의 저작권을 한국사회연구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제 14 조 (표절 방지)

논문 투고자는 논문 게재 확정 시, 최종본을 제출하기 전에 표절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논문의 표절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표절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15 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이상의 발의와 편집위원회 재직위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한국사회』 연구윤리규정

2008. 7. 1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은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인 한국사회 (이하 본 학술지)에 투고되었거나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검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연구윤리)

1. (연구의 객관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의 독창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은 저자 본인의 것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연구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이나 연구결과물의 출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연구수행과정에서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2)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정직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 이중 투고, 중복 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연구의 공개성)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상의 제약이나 기타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관련 자료와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해당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 장 연구부정행위

제 3 조 (위조) 위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단,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자료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위조로 보지 않는다.

제 4 조 (변조) 변조라 함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자료 내에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 이를 변조로 보지 않는다.

제 5 조 (표절)

1. 표절이라 함은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상의 문서 등을 통해 공개된 타인의 아이디어나 견해, 표현,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내용,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로 본다(자기 표절).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은 인용 없이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3. 국·내외 학술지 이외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논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4.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이나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등은 인용 없이 이를 기술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제 6 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란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저자로 표기하지 않거나, 반대로 논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 (이중 투고) 이중 투고란 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도 이중 투고에 해당한다.

제 8 조 (중복 게재)

중복 게재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반대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

제 9 조 (재투고)

1.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 전개방식 등의 항목

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절차

제 10 조 (편집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
2.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 소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고, 연구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제 11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1. 편집위원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할 경우, 본 연구소 소장은 즉각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의결은 의원의 2/3 이상 출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추가 조사를 할 수가 있으며,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 개최한다.

제 12 조 (이의 신청)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1회에 한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을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수정 또 재확인할 수 있다.

제 13 조 (비밀보장의 의무)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허위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비밀보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인지된 날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다.

제 4 장 별 칙

제 14 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1.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제3조 내지 제8조에 9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 (2) 이중 투고의 경우,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이중 투고 사실을 통보한다.
 - (3)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2.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제3조 내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

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을 공지한다.
- (2) 해당 논문을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 (3) 해당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 3 조 (규칙 재·개정)

1. 이 규약은 1998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제1차 개정에 의한 새로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2차 개정에 의한 새로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원고제출 및 작성 요강

원고제출

1. 투고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이면서 학술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제출된 논문은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치며 평가자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또는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원고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당해 원고마감은 발행일 30일전이며 발간예정일은 당해 6월 30일, 12월 30일입니다. 게재 원고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합니다.
4.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원고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백색 A4 용지에 단면으로 출력한 원고 4부를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편집위원회로 우송합니다.

보낼 곳: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우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Tel: 02) 3290-1651 / Fax: 02) 924-4365

E-mail: socialresearchku@gmail.com

Homepage: <http://isrku.org>

원고작성

1. 원고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부록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흔글 97 기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초과시 추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원고작성의 기본적인 형식요건은 다음과 같다.

글자크기: 본문 10p, 각주 9p, 인용문단 9p

줄 간격: 170%

여백 주기: 좌우 3cm, 위 2cm, 아래 1.5cm, 머리말·꼬리말 각 1.5cm

3.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 표기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속에 넣어서 쓸 수 있다. 기타 외국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 뒤의 괄호 속에 넣어 쓴다.

4. 원고는 표지, 국문요약, 영문 주제어(Key Words) 순서로 구성한다.

5. 표지에는 논문제목, 필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이메일·전화·팩스)가 명기되어야 한다. 필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횡렬로 기재하되, 1명의 '제1저자'(교신저자)를 지정하여 명시하고 다른 저자들은 '공동저자'로 표기한다.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 수령 사실은 각주로 기재한다.

6. 국문요약은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용지 1/2장 이내 분량으로 작성한다.

7. 본문은 논문 제목을 첫머리에 기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필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표시나 서술은 삼가야 한다.

8. 본문 서술의 세부적인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장·절·항·목의 번호는 “I”, “1”, “1)”, “(1)”의 순서로 매긴다.

2) 강조어는 ‘ ’, 인용구는 “ ”로 둘러싼다.

3) 전거는 저자명과 간행연도를 반드시 표기하고, 필요시 인용 페이지를 덧붙여 기재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이용할 때도 그 방식은 같다.

구체적인 전거표기의 예는 아래와 같다.

(1) 저자명은 서술의 흐름에 따라 본문에 노출시킬 수도 있고, 괄호속에 넣어야 할 경우도 있다.

[예1] “...홍승직(1994: 23)은 ...”;

[예2] “...라 했다(홍승직, 1994: 23).”

(2) 외국인 저자명은 한글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한다.

[예1] “...밀즈(Mills, 1956)”

-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저자명을 가운데점으로 구분하고 항상 병기한다.

[예] “...(김용학 · 임현진, 2000)”

-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전거표기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외”(et al.)를 사용한다.

[예] “...(양춘 · 김문조 · 손장권 · 박길성 · 김철규, 2001)” ; “...(양춘 외, 2001)”

- (5) 출간예정인 저술은 “출간예정”(forthcoming)을, 미간행물은 “미간행”(unpublished)을 명기한다.

[예] “...(현영석, 2003 출간예정)” ; “...(Lee, forthcoming)”

9. 각주는 꼭 필요한 것만 달도록 하여, 가급적 10개 내외로 최소화시킨다.

10. 참고문헌의 나열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 먼저한 국어 문헌을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이어서 동양어 문헌을, 마지막으로 서양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 1)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 2) 동일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간되어 두 편 이상일 때는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 b, c...를 부가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 3)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 4) 학술회의 발표문은 발표 장소와 날짜를 명기한다.
- 5) 참고문헌 기재의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1) 서적

최재석. 1990. 「현대가족연구」. 일지사.

임희섭. 1987a. “한국정치체계의 위기구조와 정책방향: 1961-86.”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한국사회개발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pp. 193-218

- _____. 1987b. “정보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정책의 과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한국사회개발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pp. 125-149.
- 菅谷章(스가랴 아기라). 1988. 「日本社會政策史論」. 東京: 日本評論社.
- Berger, P. L. and H. M. Hsiao (eds.). 1988. *In Search of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 New Brunswick: Transaction.
- Cannell, C. F., P. Miller and L. Oksenkerg. 1981. “Research on Interviewing Techniques.” pp. 389-437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 Amsden, A. H. 1989. *Asian's Next Giants: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인근달 역. 1990. 「아시아의 다음 거인: 한국의 후발 공업화」. 시사영어사).
- (2) 학술지, 학위논문, 보고서, 인터넷문서
- 손장권. 2001. “정보사회의 환경과 조직변화.” 「한국사회」 4: 147-172.
- Heckman, James.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153-162.
- Shin, Ho Hyun. 1990. “Schooling and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 Korea.” Unpublished of Hawaii.
- Krafcik, J. F. and J. D. Macduffie. 1989. “Explaining High Performance Manufacturing.” *Working Paper of IMVP*. MIT.
- Kollock, P. and M. Smith. 1994. “Managing the Virtual Commons: Cooperation and Conflict in Computer Communities.”
<http://www.sscnet.ucla.edu/soc/csoc/vcommons.htm>.
- (3) 번역서
- 휴이트(John P. Hewitt). 2001. 「자아와 사회: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사회심리학」. 윤인진 역. 학지사.
- 클레크 · 히긴스 · 스파이버(S. R. Clegg, W. Higgins and T. Spiby). 1994. “경제문화: 포스트 유교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공유식 · 김

혁래·박길성·유홍준 편. 「신경제사회학의 이해」. 역사비평사. pp. 195-210.

Weber, Max. 1951(1920). The Region of China translated by Hans H. Gerth. New York: Free Press.

11. 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1) 하나씩 별지에 작성하되 본문 속에 들어갈 자리를 지정하여 “〈표 1〉 여기에 제시”와 같이 표시한다.
- 2) 제목은 “〈표 1〉...”과 같은 형식으로 표나 그림의 위에 적는다.
- 3) 설명주는 “주”로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 ”로 시작하여,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어 놓는다. 범례도 그림의 하단에 표시한다.
- 4) 표 속에 칸과 행에는 적절한 범주명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
- 5) 표의 선은 맨 위에 맨 아래 선 및 첫 번째 열의 밑선 까지만 굵도록 한다.
- 6) 그림은 색을 넣어 그려도 좋으나, 인쇄시에는 흑백으로 표현됨을 유의한다.
- 7) 그림에는 x축과 y축과 곡선·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주어야 한다.
- 8) 통계적 유의도는 “* p < .05.” “* p < .01.” “*** p < .001”과 같이 표기한다.

심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분들은 2021년 한 해 동안 한국사회에 투고된 원고들을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여러 번 꼼꼼히 심사해 주셨습니다. 이에 편집 위원회를 대신해 편집위원장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봉오	국민대학교	이문호	고려대학교
김수한	고려대학교	이보고	부경대학교
김영선	고려대학교	이상현	원광대학교
김재우	전북대학교	임동균	서울대학교
김찬룡	동의대학교	임승엽	고려대학교
김현철	성균관대학교	장서현	성균관대학교
김희강	고려대학교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소
문경연	창원대학교	정인관	송실대학교
박효민	서울시립대학교	조혜정	삼성경제연구소
손승영	동덕여자대학교	최영진	중앙대학교
송효중	고려대학교	최 울	중앙대학교
신인철	서울시립대학교	최인이	충남대학교
심재만	고려대학교	홍성태	고려대학교
이명진	고려대학교	황선재	충남대학교

편집위원 명단

편집위원장: 신은경(고려대 사회학과)

편집위원: 김재우(전북대 사회학과)	김지훈(인하대 사회교육과)
신인철(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심보선(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심재만(고려대 사회학과)	윤상우(동아대 사회학과)
이승철(서울대 인류학과)	이해진(충북대 사회학과)
장서현(성균관대 사회학과)	정고운(경희대 사회학과)
조정우(경남대 사회학과)	조혜정(삼성경제연구소)
황선재(충남대 사회학과)	

(이상 가나다순)

편집간사: 배진태(고려대 사회학과)

한국사회 제22집 2호

2021년 12월 29일 · 인쇄

2021년 12월 31일 · 발행

편집 · 발행/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전화: 02-3290-1651 팩스: 02-924-4365

E-mail: lab050@korea.ac.kr

한국사회 투고: socialresearchku@gmail.com

Homepage: <http://isrku.org>

인쇄 · 출판/도서출판 새로운화

전화: 02-313-1431 팩스: 02-313-1434

ISSN 1229-036X

뒷표지